

# 행정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2009. 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481-14



# 행정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2009. 12.



**법무부**





# Contents

## I. 법무부 소개

- 1. 임무(역할) ..... 3
- 2. 조 직 도 ..... 4

## II. 행정정보공개제도

- 1. 개 요 ..... 7
- 2. 제도운영 일반 ..... 9
- 3. 인터넷 행정정보공개 코너 ..... 23

## III. 행정정보의 공표제도

- 1. 행정정보 공표제도의 개요 ..... 29
- 2.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 30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 1. 비공개대상 정보의 개요 ..... 39
-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 ..... 41

## V. 주요 결정 사례

- 1. 법무부 주요 결정 사례 ..... 67
- 2. 비(부분)공개 대상 내부규정 ..... 124

## 참/고/자/료

1. 법무부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
2. 정보공개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0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3. 수수료 산정기준표
4. 정보공개 관련서식

# I. 법무부 소개



1. 임 무

2. 조직도

열려 있는 **窓**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 1 임무(역할)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48년 제헌국회의 정부조직법 공표에 의해 조직되어 현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조직은 장관·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찰관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업무를 관장하는 법무연수원과 검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교정기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산하단체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개의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통상에 관한 법률 자문, 헌법재판의 수행, 사법시험,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및 형집행 지휘·감독,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외국인 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소년비행의 원인분석·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용자의 수용·구금·처우 및 석방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외국단체의 등록 및 활동상황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조직도



▷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 소속기관

- 법무연수원, 검찰청(대검찰청 등 63개 기관), 보호관찰(서울보호관찰소 등 60개 기관), 소년보호(서울소년원 등 17개 기관), 치료감호(1개 기관), 교정(서울지방교정청 등 51개 기관), 출입국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36개 기관)

### ※ 산하단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 Ⅱ. 행정정보공개제도



### 1. 개요

- 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나.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다. 공공기관의 의무

### 2. 제도운영 일반

- 가. 업무처리 흐름도
- 나. 정보공개 청구
- 다. 정보공개 결정
- 라. 비용부담
- 마. 불복신청
- 바. 제도운영 주요내용 질의 답변

### 3. 인터넷 행정정보공개 코너

- 가. 이용방법
- 나. 사전정보 공표
- 다. 정보공개 청구
- 라. 공개여부 및 불복신청 사례
- 마. 국회관련 정보공개



열려 있는 **窓**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 1 개요

#### 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나.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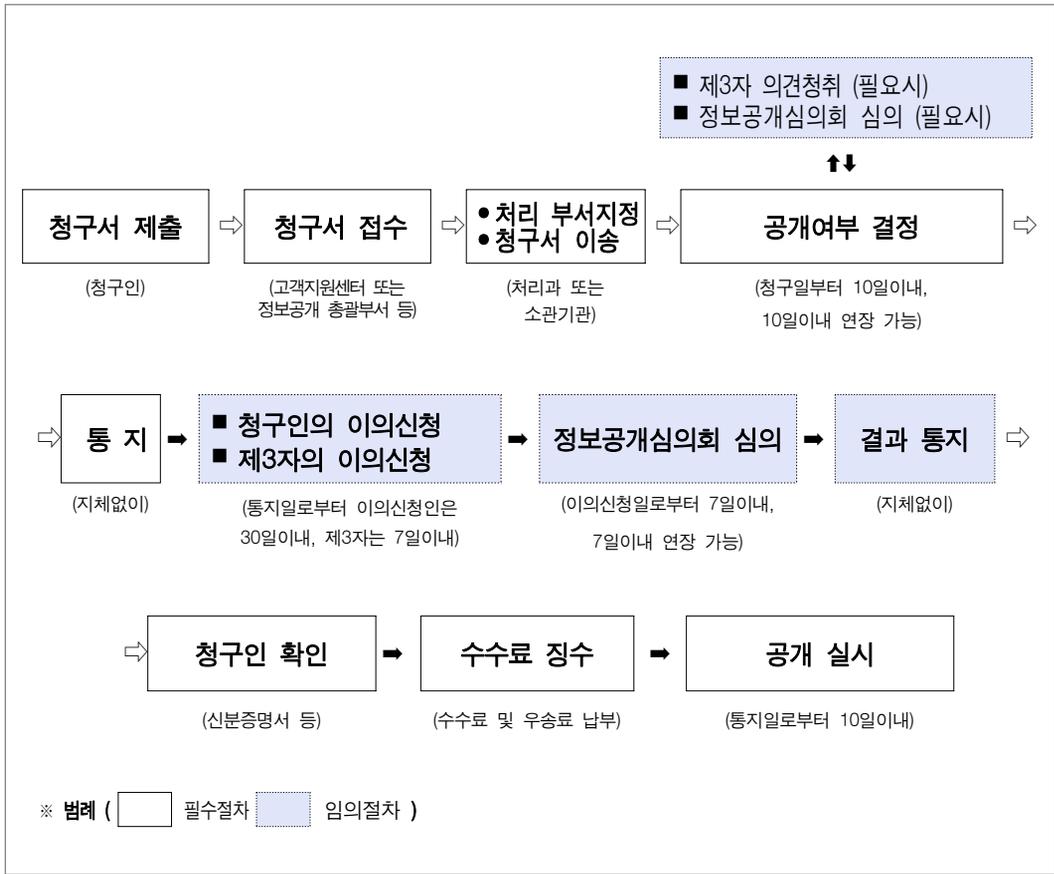
-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92. 1.)
-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제도도입 추진 ('92. 11.)
-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94. 7.)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96. 12. 공포, '98. 1. 시행)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98. 1.)
  -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정 (법무부 예규 제682호, '03. 11. 시행)
- ▶ 정보공개법 개정 ('04. 1, '07. 1, '08. 2.)
- ▶ 정보공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04. 7, '07. 4, '08. 2.)

## 다. 공공기관의 의무

-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2) 정보관리체계 정비 의무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3)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 의무
  - 정보공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4)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등 컴퓨터 통신을 통한 자료제공 노력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 노력
- 5)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비
  -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작성·게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 2 제도운영 일반

### 가. 업무처리 흐름도



### 나. 정보공개 청구

- 1) 청구대상 행정정보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임 (법 제2조 제1항)

-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미보유”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하게 됨 (법 제2조 및 제3조)
  - 문서 등의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기관이 작성·취득 등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 2) 청구권자

- 모든 국민 (자연인·법인, 중증·동창회 명의, 미성년자 포함)
  - ※ 이해관계·사용목적 및 법인격 여부와 무관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3)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공개청구 대상정보와 공개방법, 피청구기관 등을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함 (관련 서식 참조)
- ※ 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구술, 인터넷·E-mail 등 정보통신망
- ※ 구술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담당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게 할 수 있음 (관련 서식 참조)
- ※ 정보공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형태 및 교부방법에 따라 공개함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 공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4) 접수 및 처리과 지정

- ※ 접수증의 교부 등 :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함. 단, 다음의 경우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등

☼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배부

- 5) **접수된 청구서의 이송**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송된 기관과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사실을 통지

### 다. 정보공개 결정

- 1) **처리기간** : 청구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함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정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결정절차(법 제11조 및 제13조)” 없이 공개함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 결정된 사항도 이에 해당함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접수일 기준)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청구인은 즉시 이의 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처리기간 산정시 초일(접수일)과 중앙행정기관의 휴무 토요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제외함

2)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보유·관리중인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문 그대로 모두 공개하게 됨 (법 제9조 제1항)

※ 공개여부의 결정 내용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임

- **공개결정** :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 **부분공개 결정** : 공개대상 정보에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비공개 결정** : 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 및 근거, 불복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함
- ☀ 비공개대상 범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41페이지 참조)
- ☀ 만약,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또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됨
  - 의견조회 통지를 받은 제3자 등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비공개 요청한 제3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3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30일 이상의 간격을 두며 제3자 등은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보공개심의회**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됨
  -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위원장), 각 실·국·본부 주무과장(위원, 6명) 외에 심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외부위원(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별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기타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3) 공개방법

- ※ 공개형태 및 교부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서에 기재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에 따라 결정하게 됨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 출력물, 매체저장물 교부 등
  - 필름 및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등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시** : 결정서에 “공개내용, 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공개일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수료”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함
- ※ 청구인은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공개방법(공개기일, 공개방법, 소정의 수수료 등)에 따라 공개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보공개청구 사안은 종결처리 될 수 있음
- ※ 불복구제 절차에 대한 세부내역 (17페이지 참조)

### 4)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본인 확인

- **피공개권자**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필요시 그 정당한 대리인으로 확인된 자에게 공개하게 됨
- ※ 본인 확인 등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등
  -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입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일반 행정자료 사본제공 등”의 공개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여부 확인을 생략함

### 라. 비용부담

- 1) **수익자 부담원칙**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함
  - **우송료** :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책정하게 됨
  - ☼ 우편요금은 공개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며, 인터넷 등 우편요금이 소요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 **수수료** : 참고자료의 “수수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 2) **납부방법** : 우송료는 우표로 납부하고 수수료의 경우 법무부 본부 및 소속 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산하단체에는 현금 납부가 원칙
  - ☼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 3) 수수료의 감면 등

- 면 제 : 인터넷,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 이미 파일로 작성되어 있고 공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일천원 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감 면 : 공개청구를 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하여 부과할 수 있음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 감액을 인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액대상이 아님

### 마. 불복신청

#### 이의신청

- 1) **신청권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2) **신청기간**
  - ☼ 청구인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제3자 : 제3자의 의사에 반한 피청구기관의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3) **신청방법**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인터넷 등으로도 가능)
  - ☼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 (관련서식 참조)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과통지**
  -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 가능)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이의신청 사항은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또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인용여부를 심의·의결함
- ※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함

### 행정심판

- 1) **청구적격** : 정보공개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또는 제3자
  -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2) **청구기간**
  - ※ 정보공개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됨
- 3) **청구방법** : 행정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함.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 ※ 단, 산하단체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법무부장관이 됨
- 4) **재 결**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행정소송

- 1) **제기권자** : 정보공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과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또는 제3자
  - ☼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 :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3) **판결** : 인용, 기각, 각하 결정
  - ☼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고 당사자간 합의 및 화해도 가능함

### 바. 제도운영 주요내용 질의 답변

- 1) **사전공표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 ☼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규정취지와 동법 제2조 제1호의 해석상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 모든 국민(교정시설 수용자 포함)은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 등) 공표(공개)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음
  - ☼ 다만,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개정보의 위치 또는 열람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16조에 의한 “즉시공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2) 정보를 일괄 청구(정보 불특정)하는 경우

- ☼ 정보공개법의 규정 취지와 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상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그 실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한정되어 있음
- ☼ 청구인은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도록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서울행법 2004. 4.28. 선고 2000구 4179 판결)

## 3) 영수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매출전표·영수증 등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써 보호받아야 함(대법원 2003. 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 4) 정보공개 청구의 이송

- ☼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
-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원래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기관이 공개 여부 결정

### 5) 이송의 한계

- ☼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자체가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으로 이송에 같음
- ☼ 청구인이 소관기관을 알고 있고 소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목적 등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관기관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이송에 같음

### 6)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 처리

-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로서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7) 반복 청구의 처리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3회 이상) 청구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8) 청구정보의 양이 과다할 때

- ☼ 청구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부 완료)

### 9) 공개 일시 경과시 종결 처리

-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수수료 미납 등)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음

### 10) 즉시 공개

-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나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이미 여러번 공개로 결정·통지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 청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절차(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통지서 작성·교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제도
-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수수료 납부가 즉석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부분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

### 11) 정보공개시 정보가공의 허용 문제

- ※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될 수 있음

### 3 인터넷 행정정보공개 코너

#### 가. 이용방법

-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j.go.kr](http://www.moj.go.kr)) → “정보공개” 코너
- 정보공개 코너의 구성 : 사전정보공표 /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 및 불복 신청사례 / 국회관련 정보공개 / 정보공개 Q&A

#### 나. 사전정보 공표

- ▶ 이 곳은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법무행정에 관한 주요정책자료, 예산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코너임

##### ☀ 정보공개 목록

- 국민들의 정보공개 편의도모를 위하여 법무부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게시하고 있음

##### ☀ 주요정책 추진과정 공개

-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부가 추진 중인 주요정책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있음

##### ☀ 행정자료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무부에서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결재문서를 실·국·본부별로 게시하고 있음

##### ☀ 업무추진비

- 분기별 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게시하고 있음

#### 다. 정보공개 청구

▶ 이 곳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코너로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공개 정보도 제공되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음

☀ 이용안내

□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청구자 및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이의신청 및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제도 이용 안내서 내려받기 등

☀ 관련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pen.go.kr>)로 연결

☀ 실·국·본부별 정보공개 담당자 안내

☀ 정보공개 청구신청 ⇒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

☀ 인터넷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서면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방법과 동일하지만, 인터넷으로 공개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우송료는 납부하지 않음

#### 라. 공개여부 및 불복신청 사례

▶ 이 코너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개여부와 불복신청에 대한 처분 및 결정·판결 사례를 게시하고 있음

#### 마. 국회관련 정보공개

▶ 이 곳은 국회자료제출 현황과 그 주요내용, 기타 법무정책 관련 주요이슈 등을 공개함

☀ 주요정책자료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현황과 주요 내용, 법무정책 이슈 등

☀ 법령 제·개정

-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국회 상정 내용 및 주요 내용 등

☀ 예산

- 국회 예산제출 현황, 예산안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열려 있는 **窓**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 Ⅲ. 행정정보 공표제도



1. 행정정보 공표제도의 개요

2.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열려 있는 **窓**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 1 행정정보 공표제도의 개요

▶ 공표제도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정책자료, 예산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를 말함

☼ 법 제7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개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03. 6.) 제5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

## 2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 ▶ 법무부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30여종의 공표대상 정보의 목록과 범위,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내역은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참고
- ▶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 “행정자료실”과 연계시스템 구축
- ※ 법무부에서는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표대상 문서의 결재 완료시, 원문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하고 있음
- ※ 제공정보의 성격에 따라 결재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게시되도록 준비중에 있음

## ●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공 통	법무행정 분야별 주요정책 추진과제	정책수립, 정책 결정 및 실행, 추진실적 자료	수 시 (결재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주요정책 추진과정)	각 부서
기 획	대통령 업무보고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서	수 시 (보고서)	"	홈페이지 (법무부소개 → 법무부는 → 일반현황 → 업무계획및평가)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회관련 자료	질의·답변 자료 (개인 식별자료 제외)	수 시 (제출· 보고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국회관련 정보공개)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회의원 요구자료	수 시 (제출· 보고서)	"	"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수 시 (제출· 보고서)	"	"	기획재정 담당관실
		업무현황·현안보고 자료	수 시 (제출· 보고서)	"	"	기획재정 담당관실
	주·월간 업무 추진 현황	주·월간 업무 추진 실적·계획 보고서	매 월 (월 초)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행정자료실)	기획재정 담당관실
예산 현황	세입·세출 예산 현황	매 년 (1월중)	"	홈페이지 (법무부소개 → 법무부는 → 예산현황)	기획재정 담당관실	
	재정집행계획· 집행실적 등	수 시 (연중)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국회관련 정보공개)	기획재정 담당관실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기 획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수 시 (국회 제출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국회관련 정보공개)	기획재정 담당관실
		예산낭비 사례 발굴· 조치	수 시 (연중)	"	홈페이지 (국민광장 → 신고의장 → 예산낭비신고센터)	기획재정 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결산개요, 각종 결산자료	매 년 (국회 제출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국회관련 정보공개)	기획재정 담당관실
	차량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현황	연 초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행정자료실)	운 영 지원과
법 무	법무부 소관 법령 제 ·개정안 및 입법예고안	개정·예고안	수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지식 → 법령정보 → 소관법령/ 입법예고)	각 부서
	부동산 실명제 관련 질의 응답자료	질의 및 응답자료	수 시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상담사례)	법 무 심의관실

##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운 영 지 원	입찰관련 자료	입찰계획서 및 결과	수 시 (공고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홈페이지 (법무뉴스 → 입찰정보)	운 영 지원과

### 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장 소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공 통	법무행정분야별 정책수립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	연구보고서, 검토서, 공청회 자료	수 시 (정책 수립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행정자료실)	각 부서
법 무	사법시험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 기 (회의시)	"	홈페이지 (www.moj.go.kr/ barexam)	법 조 인력과
		사법시험 시행일정	연 중 (연초)	"	"	법 조 인력과
		문제지 및 최종정답	연 중 (시험후)	"	"	법 조 인력과
		접수 현황 및 각종 통계 게시	연 중 (시험후)	"	"	법 조 인력과

###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운 영 지 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장·차관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분 기 (1, 4, 7, 10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업무추진비)	운 영 지원과

5.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기 획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체평가 결과	매 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부소개 → 법무부는 → 일반현황 → 업무계획 및 평가)	행정관리 담당관실
	규제개혁 추진상황	규제완화 및 추진 상황	수 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 법령정보 → 규제개혁이 희망)	법 질 서 담당관실
	법무연감	전체	매 년 (발간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행정자료실)	기획재정 담당관실
	법무부 소속직원의 정·현원 현황	직급별 인원현황	매 월 (익월초)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행정자료실)	행정관리 담당관실
법 무	도서실 보유장서 현황	법무자료 발간	수 시 (작성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 간행물)	법 무 심의관실
		보유장서 목록	수 시 (작성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 간행물)	법 무 심의관실
검 찰	검찰관련 통계	사형집행·형사보상금 집행·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사면 현황	수 시 (변동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행정자료실)	형 사 기획과

### III 행정정보의 공표제도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범 죄 예 방 정 책	보호관찰 통계 (통계연보)	감호청구 현황,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현황,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	홈페이지 (범죄예방 정책국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통계자료)	보 호 법제과
	보호관찰관련 통계 (통계연보)	대상자 관리·사회봉사· 수강명령·조사업무 처리 ·범죄예방위원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	홈페이지 (범죄예방 정책국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통계자료)	보 호 관찰과
	소년보호관련 통계 (통계연보)	수용·교육·분류심사 현황	매 년 (발행시)	"	홈페이지 (범죄예방 정책국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통계자료)	소년과
교 정	교정관련 통계	수용·교육훈련· 교도작업 운영현황	매 년 (발행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www.corrections. go.kr)	보안과 사회 복귀과 직업 훈련과
출입국	출입국관리관련 통계 (통계연보)	국민출국자· 외국인입국자· 등록외국인·사증발급· 남북왕래자 현황	분 기 (발행시)	"	홈페이지 (www.immigration. go.kr)	정보팀
		국적민원 처리현황				국 적 난민과

6. 기타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장 소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공 통	인사자료	채용계획 등 채용자료	수 시 (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뉴스→ 채용공고)	각 부서
	훈령·예규 (비공개 대상 훈령·예규 제외)	전문	수 시 (제· 개정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법령정보→ 훈령/예규)	각 부서
	고시·공고	고시·공고문	수 시 (공고시 등)	"	홈페이지 (법무뉴스→ 공지사항)	각 부서
	보도자료	보도자료·해명자료	수 시 (송부 후)	"	홈페이지 (법무뉴스→ 보도자료)	각 부서
인 권	인권투어	관련 자료 게시	수 시	"	홈페이지 (www.hr.go.kr)	인 권 정책과
	인권레터	수집 자료 게시	수 시	"		인 권 정책과
운 영 지 원	정보공개업무 자료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 지침	수 시 (제· 개정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법령정보→ 훈령/예규) 민원실	운 영 지원과
		정보공개업무 편람	수 시 (작성· 변동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민원실	운 영 지원과
		정보목록	매 월 (매월 10일까지)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운 영 지원과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개요

2.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



열려 있는 **窓**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개요

가.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 대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축소** :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행정편의적 적용을 통한 비공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별로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정보의공개확대를위한지침, 국무총리훈령 제442호, '03. 6.)

## 2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

《법무행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소관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비밀관리, 보안업무	비밀문서	각 부서
감 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감찰담당관실

####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보안업무 관련 접수 및 자체생산 비밀문서	각 부서
법 무	○시험정보의 공개(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사법시험 제3차 시험 채점표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답안지 스캐닝	법조인력과
출 입 국	○외국인 동향조사 활동계획 수립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정보사업 심사분석	체류조사과
감 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 조치 ○법무부 소속 공무원중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서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자료 ○선물신고제도 관련 자료 ○주식백지신탁 관련 자료 ○병역사항 (병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감찰담당관실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기 획	법무시설기준규칙	동 지침	시설담당관실
교 정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교정시설별 수용자 분류수용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	난민인정 관련 업무	관련 문서(관련지침은 공개대상)	국적난민과
	사증발급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사회통합과

###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연습(을지연습) 실시와 관련한 업무처리</li> <li>○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li> <li>○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li> <li>○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중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li> </ul>	각 부서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을지연습 기본계획 수립, 실시 및 강평</li> <li>○ 법무부 총무계획 수립, 검토 및 승인</li> <li>○ 자체 총무계획 및 응전자유화집행계획 수립</li> <li>○ 직장예비군 편성·교육훈련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li> <li>○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관련 국방부 및 법무부 교육훈련계획</li> </ul>	비상계획관실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민방위 편성 운영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 계획, 교육훈련</li> <li>○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 및 점검자료</li> <li>○ 법무부 소관 국가재난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li> <li>○ 법무시설 방호지침 및 방호태세 점검</li> <li>○ 비상대비 관련 세미나 등 일반업무 처리</li> <li>○ 산하기관 비상대비 계획점검·조정</li> </ul>	비상계획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예산안 편성</li> </ul>	기획재정담당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운영</li> </ul>	행정관리담당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li> <li>○ 정보보호 내부대책 및 전략</li> </ul>	정보화담당관실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대비 법무계획·통일기획요원 등 비밀자료(목록)</li> <li>○ 비밀로 분류된 연구 결과물</li> </ul>	통일법무과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형사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대책</li> </ul>	국제형사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li> </ul>	사회복귀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국심사관련 업무지시</li> <li>○입국심사제도개선</li> <li>○재외공관 사증발급승인 관련 자료</li> <li>○산하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승인 관련 자료</li> <li>○사증발급편람 개정발간에 관한 시행문</li> <li>○사증발급제도개선에 관한 검토서</li> <li>○국가정보우선순위(PNIO) 자료 수집 및 자료 응신</li> <li>○선박업무 및 해상밀입국 방지관련 업무지시</li> <li>○선박업무 제도개선관련 공문</li> <li>○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 개최</li> <li>○대테러 및 경호안전관련 회의 참석</li> <li>○위·변조여권 관련 자료발간</li> <li>○WTO 및 FTA 국제협상 업무</li> <li>○주한외국공관원 등 접촉</li> </ul>	출입국심사과
출 입 국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최종 확정 및 시행	체류관리과
출 입 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령 위반관련 기획수사	체류조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민인정신청자 접수 및 조사보고서 처리</li> <li>○난민인정여부 심사·결정</li> <li>○난민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처리</li> </ul>	국적난민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국적동포의 재외공관 사증발급승인 및 이와 관련된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 자료</li> <li>○외국국적동포의 산하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승인 및 이와 관련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자료</li> <li>○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제도개선에 관한 검토서, 시행공문</li> </ul>	사회통합과
운영지원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운영지원과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검 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문서	공안기획과
검 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문서	공안기획과
출입국	출국금지·정지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입국금지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입국규제 실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기 허가 및 폐기 관련 자료, 위탁관리관련 세부자료</li> <li>○범죄(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li> <li>○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보)</li> </ul>	각 부서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운영</li> <li>○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운영</li> </ul>	공안기획과
범죄예방 정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출소심사회의 기초자료</li> <li>○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위촉 및 해촉 승인 및 관리</li> <li>○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심사회의 기초자료</li> </ul>	보호법제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국심사 관련 업무지시 및 제도개선 검토자료</li> <li>○선박업무 및 해상밀입국 방지관련 업무지시</li> <li>○선박업무 제도개선 관련 자료</li> <li>○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li> <li>○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규제자 결정과 관련하여 산하기관에서 보고한 자료</li> <li>○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입국규제에 관한 자료</li> <li>○입국금지해제 자료</li> </ul>	출입국심사과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대상 범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검 찰	형사·공안사건의 범죄예방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의견 수렴·조정 중에 있는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검찰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범죄예방 정 책	사회보호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법제과
	판결전 조사 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관찰과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관찰과
	분류처우심사 등 수용처분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교과·생활성적 등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보호소년 외부행사 감호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보호·위탁 소년이송 및 호송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보호소년 임시퇴원 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교 정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특이수용자 지정 및 처우 관련 문서	보안과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항	접견부 등 관련 문서	보안과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계구에 관한 사항	관련 지침	보안과
	분류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분류심사 및 가석방심사 관련 문서	분류심사과
출입국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	관련 지침	체류관리과
	출입국관련 사범 처리 업무	관련 문서	체류조사과
	동포 체류관리 업무	관련 문서	사회통합과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법 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관련 정보보고	국가송무과
검 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검찰과
검 찰	○사면실시 계획, 사면대상자 선정 및 관련 자료 ○형사사건의 분석 처리 및 보고	형사기획과
검 찰	○공안 관계법령의 제·개정 타당성 검토 및 입안 ○공안사건(국회의원 체포·구금 동의요구)관련 형집행 및 압수물 처리 지휘·감독 관련 문서 ○공안사건에 있어서 공공안전 위해요인 수집자료 ○공안사건의 검찰사무보고 감독 및 정보보고 ○공안사건에 있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 사건 분석 처리	공안기획과
검 찰	○범죄인 인도청구 및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 접수 ○국제형사사건관련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대책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및 대책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외국정부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주한미군지위협정관련 미군 및 미군속사건 처리 자료 ○인신매매 관련 국제수사공조 및 정보공유 ○인신매매 방지위한 유관기관 회의 ○국제수형자 이송관련 국외이송 및 국내이송 ○외국인 범죄 통계현황 및 대책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수사공조 자료(대검찰청의 수사협조요청서, 유관기관 등의 수사자료 및 정보제공서, 수사공조서, 정책 건의 및 통보서, 정책회의 및 보고서) ○국제수형자 이송관련 신청서, 확인서, 명령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국제형사과
범죄예방 정 책	○보호소년 등의 수용사고 처리 ○보호소년 등의 이송허가 상신 처리 ○보호소년 등의 퇴원허가 상신 처리 ○교과교육소년원 학사관리(졸업장)	소년과
교 정	○전국교정기관장회의 개최, 그 결과 평가 및 보고 ○교정인력 진단	교정기획과
교 정	○공안사범의 교육·교회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 내용	사회복귀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형자이송(형확정자 등, 개별처우자 등) 승인</li> <li>○교정사고에 대한 처리 관리·감독</li> <li>○공안사범 이송 승인</li> <li>○공안사범의 수용 전반 기본지침 및 정보사항 처리</li> <li>○수용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와 기본계획 내용</li> <li>○보안야간근무체계 개편 계획 수립</li> <li>○수용자 징벌제도 개선</li> <li>○무인접견관리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및 확충</li> <li>○경비교도 사고 등에 대한 정보사항 분석 및 대책 마련</li> </ul>	보안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석방심사 관련 서류, 자료 분류 및 재검토</li> <li>○가석방실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li> <li>○가석방 부적격 사유 발생여부 확인</li> <li>○가석방 집행·취소·실효</li> <li>○가석방 민원 및 진정 처리</li> <li>○가석방자 국외여행 허가여부 검토</li> <li>○가석방 통계, 가석방 관련 각종 지시 및 협조</li> </ul>	분류심사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석방 관련 정보보고</li> <li>○수형자자치제 현황</li> <li>○분류처우 관련 민원 및 진정 처리, 지시 및 보고</li> <li>○분류처우 관련 정보보고, 법령 제·개정 등</li> <li>○분류분과회의</li> </ul>	분류심사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조사내용 등(본인의 청원서나 접수증명원, 청원결정통지서 등은 공개)</li> </ul>	의료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국규제자(출국금지·정지자, 연장, 해제 요청자) 접수 문서 및 입력 자료</li> <li>○출국규제자 관련 출입국정보시스템</li> <li>○외국인 동향에 관한 주한외국공관원 등 접촉 관련 제도개선, 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사항</li> </ul>	출입국심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동향조사요원 정원현황</li> <li>○불법체류외국인대책협의회 계획 수립 및 회의자료 내용</li> </ul>	체류조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국적동포 등 동포 관련 체류관리 지침</li> </ul>	사회통합과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책수립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중에 있는 문서	관련 문서	각 부서
	승진, 전보 등 인사계획	관련 문서	각 부서
	다면평가	관련 문서	각 부서
	근무성적평정	관련 문서	각 부서
법 무	법무자문위원회 및 산하특별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관련 문서	법무심의관실
	법령안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자료	관련 문서	법무심의관실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공증인징계위원회 회의 자료	관련 문서	법무과
	공증인 서류검열 결과	관련 문서	법무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제1·2차 시험과목별 성적분포, 과락율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제2차 시험전체 성적분포, 과락율,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제3차 채점내역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감 사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지시	관련 문서	감사담당관실
	불시 감찰·조사계획	관련 계획	감사담당관실
출입국	귀화, 국적회복 및 결정이유	관련 문서	국적난민과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방문 관련 공문</li> <li>○ 감사수감 관련 자료, 감사결과 보고서</li> <li>○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 심사기준은 공개)</li> <li>○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특정개인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및 개인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만,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li> <li>○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다만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li> <li>○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li> <li>○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등)</li> <li>○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 지장을 주는 정보</li> <li>○ 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심의·협의·조사 자료 및 자체 검토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의 혼선 야기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li> <li>○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li> <li>②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li> <li>③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li> </ul> </li> <li>○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li> </ul>	각 부서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포상에 관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li>○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li> <li>○ 법령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와 공개할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회의자료</li> </ul>	각 부서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낭비사례 발굴·조치관련 답변문서</li> </ul>	기획재정 담당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품질관리카드 입력관리</li> <li>○ 자체 공무원제안 접수, 검토 의뢰 및 심사결과서</li> <li>○ 성과관리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li> <li>○ 규정 정비를 위한 자료 취합 및 개정안</li> <li>○ 응시원서 접수대장, 채용서류</li> <li>○ 다면평가계획서, 다면평가 결과분석서 및 순위명부</li> <li>○ 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li> <li>○ 인사심사자료, 인사심사요청 공문</li> <li>○ 국외훈련 다면평가서</li> <li>○ 조직진단 및 평가에 따른 결과분석과 대응방안</li> </ul>	행정관리 담당관실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법령 제·개정안의 초안, 확정된 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 조희,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된 의견,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법제처 심사의뢰, 심사중인 법령안 및 소관부령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필증</li> <li>○ 각 부처 법령자문에 있어서 제·개정법령안, 자료조사결과, 관련 실·국·본부로부터 제출된 의견 및 검토의견</li> <li>○ 타 실·국·본부 소관법령·훈령·예규 제·개정안에 대한 법령(일반)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대상 법령·훈령·예규 제·개정안 및 자료 조사, 검토의견</li> <li>○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상정안건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발표 자료</li> <li>○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조희 및 자료조사, 검토의견, 합의서 (의견서 및 합의담당관 서명 포함)</li> <li>○ 민사관계법령에 대한 연구 자료수집, 회의참가, 검토 및 계획</li> <li>○ 법무자문위원회 본회의 등 회의개최 준비, 회의자료 및 회의록</li> <li>○ 법무자문위원회 직원채용 시험문제 및 관련공문</li> </ul>	법무심의관실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호사 징계 관련 서류(접수, 검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항)</li> <li>○공증사무소 관련서류 검열 및 시정지시</li> <li>○변호사법령 개정안 및 의견조회</li> <li>○공증제도 개선관련 의견조회, 검토의견서 작성</li> <li>○공증관련 법령개정안 초안 작성 및 의견조회</li> <li>○공익법무관관련 법령개정안 초안 작성 및 의견조회</li> </ul>	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약 등 국제협약안에 대한 법률의견요청서 접수 공문, 법률검토, 의견회신 내용</li> <li>○외교통상부의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의뢰 접수, 법률검토 및 의견회신 내용</li> <li>○각국 협상동향 전문, 각국 협상동향 보고서</li> <li>○법률시장개방 관련 협상대응 공문 및 전문, 검토, 관계부처 대책 회의 및 국제회의 참석자료</li> <li>○APEC회의 관련 접수공문 및 전문, 결재 문서</li> <li>○국제상거래협약 관련 접수공문 및 전문, 검토,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국제회의 참석자료</li> <li>○FTA 협정체결 접수공문 및 전문, 검토, 관계부처의 대책회의 및 국제회의 참석자료</li> <li>○OECD 동향에 대한 접수공문 및 전문, 결재 문서</li> <li>○WTO 서비스 전문, 검토 및 결재 문서</li> <li>○WTO 접수공문 및 전문, 검토 및 결재 문서</li> <li>○법무협력관 관련업무보고</li> <li>○통상관련 자료수집, 의견조율, 참가여부 결정, 협상준비자료</li> <li>○법무협력협정 체결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li> <li>○법무협력 교류대상국 선정을 위한 실무자 접촉 및 교류방안</li> <li>○법제정비지원 대상국 선정 및 지원방법</li> <li>○국제거래법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자료 및 국제협약가입 추진 절차</li> </ul>	국제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관련 정보보고</li> <li>○국가배상심의회 자료</li> </ul>	국가송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북승인·북한주민접촉신고·사업자승인·물자반출입 승인에 대한 의견</li> <li>○법령 제·개정에 대한 의견</li> <li>○중요사항 법적 자문·검토의견</li> <li>○교류협력추진협의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회의 의견</li> </ul>	통일법무과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검토보고서</li> <li>○ 업무처리 관련 지침</li> <li>○ 비공개 회의 내용, 자료</li> </ul>	통일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 법령 제·개정안의 초안, 심사중인 법률안, 관계부처의 의견 조화, 입법예고된 안에 대한 외부기관 의견</li> <li>○ 각 부처 법령자문에 대한 법령검토 및 관련 실·국·본부의 자료 조사에 관한 의견조회</li> <li>○ 타 실·국·본부 소관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법령(상사) 자문 검토 및 자료조사, 검토의견</li> <li>○ 상사관계법령, 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수집, 회의참가, 검토 및 입법 추진 계획</li> <li>○ 상사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자료조사, 제·개정 필요성 검토의견</li> <li>○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심사, 지정,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관련 자료</li> <li>○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심사, 지정,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관련 자료</li> <li>○ 법무자문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준비, 회의자료 및 완성 되기 전의 회의록</li> </ul>	상사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시험 1차시험 합숙출제</li> <li>○ 사법시험 2차시험 합숙출제 및 채점기준표</li> <li>○ 사법시험 3차시험 시험위원 위촉 및 질문에</li> <li>○ 신규시험위원 후보자 명부</li> <li>○ 문제은행관리</li> <li>○ 사법시험 제1·2·3차 시험장 사용 협의</li> <li>○ 인터넷 접수된 응시원서</li> <li>○ 사법시험 제1·2·3차 시험 집행을 위한 각종 자료</li> <li>○ 사법시험 제3차 시험 실시계획 및 채점표</li> <li>○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문제지 제작, 배송 및 채점</li> <li>○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채점</li> <li>○ 면접 채점표 점수 입력</li> <li>○ 사법시험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li> <li>○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운영</li> <li>○ 사법시험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li> <li>○ 사법시험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유지보수 및 개편</li> </ul>	법조인력과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li> </ul>	검찰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사범관리위원회 개최</li> <li>○형사사건의 수사지휘 관련 중요사안 파악, 대처 지시, 지시사항 등 점검 및 유관기관 대책협의회 개최</li> <li>○불법행위 엄정대처 지시 및 지시사항 등 점검</li> <li>○형사사건 수사지휘관련 유관기관 대책협의회 개최</li> <li>○사면 실시 계획, 처리지침 및 대상자 선정 작업</li> <li>○피의자 보상심의회 회의 소집</li> <li>○마약류보상금지급업무</li> <li>○형사관계특별법령 제·개정 타당성 검토 및 의견조회</li> <li>○형사사건의 검찰 정보관리</li> <li>○수사상 인권침해사건의 사안 파악 및 조치</li> </ul>	형사기획과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안관계법령의 제·개정 검토</li> </ul>	공안기획과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관계특별법령 제·개정 계획안 의견조회</li> <li>○사법개혁 법안회의 계획 수립, 회의 준비, 회의록 및 보고서</li> <li>○형사법 개정회의 계획 수립, 회의 준비, 회의록 및 보고서</li> </ul>	형사법제과
범죄예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년 가석방·임시퇴원 허가·취소 안건 검토</li> <li>○보호관찰 가해제 취소 및 보호관찰 정지해제 안건 검토</li> </ul>	보호법제과
범죄예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년보호행정관련 법령 제·개정관련 정부입법계획, 의견취합</li> </ul>	소년과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내용 및 관련 자료</li> <li>○인권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의뢰 내용 및 자체 검토 내용</li> <li>○장애인차별 시정명령 관련 위원회 회의 내용</li> <li>○UN 인권기구 개인 진정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내용</li> <li>○인권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정부 의견</li> <li>○인권규약 정부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 내용 및 관련 자료</li> </ul>	인권정책과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침해 예방, 실태점검, 인권교육 및 제도개선 건의</li> <li>○인권옹호자문단 운영</li> </ul>	인권조사과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하 교정기관 순회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li> <li>○민영교도소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li> <li>○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li> <li>○교도관 복제 자체계획, 의견조회 및 연구용역 의뢰</li> <li>○교정공무원 사기진작 계획, 의견조회 및 연구용역 의뢰</li> <li>○교정캐릭터 및 휘장류 개선 계획, 의견조회 및 연구용역 의뢰</li> </ul>	교정기획과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교정기관장회의 개최</li> <li>○교정인력 진단 기본계획 등</li> </ul>	교정기획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자교육생 선발보고서</li> </ul>	사회복귀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야간근무체계 개편 계획 수립</li> <li>○경비교도대 법령 등 개정계획, 개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li> </ul>	보안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조사내용 등(본인의 청원서나 접수증명원, 청원결정통지서 등은 공개)</li> </ul>	의료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대정부 질문 대응</li> <li>○출입국 관련 비밀 소유 및 인가자 현황</li> </ul>	출입국기획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법령 제·개정</li> <li>○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li> <li>○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li> <li>○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자료, 위원회 개최</li> <li>○외국인정책 제출자료 타당성 검토</li> </ul>	외국인정책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국규제 외국인 입국허가 검토 및 결정</li> <li>○무사증 입국대상 국가지정</li> <li>○입국심사제도개선</li> <li>○시증면제협정 등 출입국 관련 협정사항에 관한 검토</li> <li>○시증발급제도개선에 관한 검토안</li> <li>○시증발급편람 개정발간에 있어서 자료수집 등</li> <li>○선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수집자료 및 확정</li> <li>○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심사업무 관련 개선계획 및 협의</li> <li>○남북왕래자 출(입)경심사 관련 개선계획 및 협의</li> <li>○출국규제에 관한 이의신청 관련 결정</li> <li>○외국인 출국정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결정</li> </ul>	출입국심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외국인력회의 회의자료 작성, 참석 및 사후관리</li> <li>○외국인력제도 개선 공문, 자료수집, 의견수렴, 검토안 및 최종확정안</li> <li>○외국인보호명령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li> <li>○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관련 통계 및 추세분석</li> <li>○보호외국인 안전관리 대책수립관련 안전사고 수집자료</li> <li>○외국인 보호시설 현황 및 문제점</li> <li>○외국인 보호 일시해제의 적정성 및 기록관리</li> </ul>	체류관리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출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운영</li> <li>○IOM 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유치계획안 수립, 협의자료 및 체결서 등</li> <li>○체류심의조정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li> <li>○거소신고지침 제·개정 개선 요구자료 수집, 타당성 검토, 의견조회 및 개선안 마련</li> <li>○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에 따른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li> <li>○외국적동포 관련 자료수집</li> <li>○외국적동포 관련 정책요구 분석 및 관련 자료 수집</li> </ul>	사회통합과
출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개선계획 수립, 자료 수집, 연구검토 및 결과보고서</li> <li>○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화사업 추진결과보고서 접수, 결함 사항 등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li> </ul>	정보팀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찰청에 대한 감사자료</li> <li>○감찰활동을 통해 수집된 비위자료 처리</li> <li>○법무부 감찰위원회관리</li> <li>○감찰업무</li> </ul>	감찰담당관실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관한 자료</li> <li>○감사원 위탁민원 처리 및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청구</li> <li>○본부 및 소속기관 일상감사</li> <li>○부내 부분감사 및 종합감사</li> <li>○일상감사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자료</li> <li>○본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감사자료</li> <li>○소속기관 등 감사결과 이의신청 관련 자료</li> <li>○공직자 비위 직무감찰 관련 특별감사</li> <li>○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대행 명령</li> <li>○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 협력</li> <li>○공직기강확립추진 및 평가</li> <li>○부패방지대책 추진</li> <li>○공무원 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관련</li> <li>○일상감사 의뢰 및 일상감사 내용 반영여부 확인</li> </ul>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도 정기보안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li> <li>○보안업무 수행지침 시달 및 실국의 세부시행계획 취합</li> <li>○취합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보안위원회 심의요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li> <li>○보안업무심사분석 결과 취합</li> </ul>	운영지원과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합된 보안업무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안위원회 심의요구 자료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내용</li> <li>○ 연도 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통보</li> <li>○ 보안업무내규 개정(안), 개정자료, 검토요청</li> <li>○ 보안업무내규 개정(안)에 대한 보안위원회 심의요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li> <li>○ 소속기관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자료 취합 및 통보</li> <li>○ 폐기심의회 의결에 의한 폐기기록물 목록</li> <li>○ 이의신청 관련 의견조회</li> <li>○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li> <li>○ 재분류 대상 목록에 대한 처리과 공개여부 의견조회, 비공개연장 신청목록</li> </ul>	운영지원과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각 부서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예비군 편성·교육훈련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li> <li>○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관련 국방부 및 법무부 교육훈련계획</li> <li>○민방위 편성 운영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 민방위 교육훈련</li> </ul>	비상계획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채용 응시원서 접수, 임용관련서류 및 채용서류</li> <li>○승진후보자 및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인사심사 자료</li> <li>○다면평가계획, 다면평가결과분석 및 순위명부</li> <li>○근무성적평가 실시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li> <li>○직무성과계약 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운영실태 조사</li> <li>○승진심사 다면평가 및 성과급 다면평가</li> <li>○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li> <li>○소청심사 변명자료, 출석관련 자료</li> <li>○외부전문가 등 특별채용</li> <li>○전직시험 실시 및 인사발령</li> <li>○휴직복직 신청</li> <li>○제2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자료 작성</li> <li>○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자료, 심의자료 및 회의록</li> <li>○징계처분 관련 자료</li> <li>○각종 혁신협의회 구성 운영</li> </ul>	행정관리 담당관실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관련 자료</li> <li>○ 법무자문위원회 직원 채용관련 임용서류 등</li> </ul>	법무심의관실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징계 관련서류 접수 및 검토</li> <li>○ 공증인 징계서류 접수 및 조사,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정</li> <li>○ 변호사법령 개정안</li> </ul>	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거래법 관련 국제회의 참가자 선발 관련 자료</li> </ul>	국제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정보보고</li> <li>○ 국가배상심의회 자료</li> </ul>	국가송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자문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관련 자료</li> </ul>	상사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험종사요원 선발 및 교육</li> <li>○ 사법시험에 접수된 응시원서</li> <li>○ 사법시험 제1·2차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관리요원 배치표</li> <li>○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성적부, 합격자 대장</li> <li>○ 사법시험 제2차시험 성적부, 합격자 대장, 답안지 열람신청서</li> </ul>	법조인력과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범관리 및 경제사범의 위반 실태 파악·조치</li> <li>○ 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개최</li> <li>○ 사면대상자 선정 작업, 사면자료 및 유공자 표창 내용</li> <li>○ 마약류보상금지급 업무</li> <li>○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개최</li> <li>○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 관리</li> <li>○ 사형집행절차</li> <li>○ 국회의원 체포·구속 시 체포·구금 절차</li> <li>○ 수사상 인권침해사건 관련 사안 파악</li> <li>○ 수사상 인권침해사건 관련 민원접수·처리</li> </ul>	형사기획과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안사건(국회의원체포·구금 동의 요구) 형집행 및 압수물 처리 지휘·감독</li> </ul>	공안기획과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법 개정회의</li> </ul>	형사법제과
범죄예방 정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소심사회의 기초자료</li> <li>○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위·해촉 승인 및 관리</li> <li>○ 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심사회의 기초자료</li> <li>○ 소년 가석방·가퇴원 허가·취소 관련 자료</li> <li>○ 보호관찰 가해제 취소 및 보호관찰 정지해제 관련 자료</li> </ul>	보호법제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범죄예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소년 등의 이송·퇴원허가 상신 관련 자료</li> <li>○교과교육소년원 입학 및 전·편입학, 검정고시, 졸업장 발급</li> <li>○보호소년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li> <li>○소년보호위원 위·해촉 추천 대상자 접수</li> </ul>	소년과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하교정기관 순회점검 확인서 등</li> </ul>	교정기획과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형자이송(형확정자 등, 개별처우자 등) 승인</li> <li>○공안사범 이송 접수, 지시</li> <li>○공안사범의 청원</li> <li>○경비교도 배치, 신상 등에 관한 사항</li> </ul>	보안과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조사내용 등(본인의 청원서나 접수증명원, 청원결정통지서 등은 공개)</li> </ul>	의료과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석방 심사 관련 자료(신청서류, 심사 및 신상조사표, 보호관찰 사안조사서 등)</li> <li>○가석방심사실무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li> <li>○가석방 집행·취소·실효 등</li> <li>○가석방 관련 민원 및 진정 처리</li> <li>○가석방자 해외여행 허가여부 검토</li> <li>○가석방 통계, 가석방 관련 각종 지시 및 협조, 국회요구자료</li> <li>○가석방 관련 정보보고</li> <li>○가석방 관련 법령 제·개정 등</li> <li>○수형자자치제 현황</li> <li>○분류처우 관련 민원 및 진정 처리</li> <li>○분류처우 관련 정보보고</li> </ul>	분류심사과
출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국규제 외국인 입국허가 관련 자료 및 입국규제 외국인 일시 해제 관련 자료</li> <li>○재외공관 사증발급승인(일반·중국) 관련 자료</li> <li>○산하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승인(일반·중국)관련 자료</li> <li>○산하기관에서 보고한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규제자 확정 내용 및 이에 관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자료</li> <li>○입국금지해제 계획 및 해제</li> <li>○국가정보우선순위(PNIO) 자료 수집 및 자료 응신</li> <li>○출국규제자(출국금지·정지자, 연장자, 해제자) 관련 접수, 입력 조치 및 이의신청 처리</li> <li>○국민 출국 금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의견조회, 결정</li> </ul>	출입국심사과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출국 정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의견조회, 결정</li> <li>○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입국규제 및 이에 관한 출입국관리 자료</li> </ul>	출입국심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조사요원, 사무소별 정원조정 등</li> <li>○외국인보호명령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서 송부</li> </ul>	체류조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회의자료</li> <li>○외국적동포 관련 수집자료 검토서</li> <li>○외국적동포 관련 정책수요, 환경분석 및 의견수렴</li> <li>○재외동포 법률상담</li> </ul>	사회통합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개선계획, 자료수집, 연구 및 검토, 결과보고서, 평가서</li> <li>○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li> <li>○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li> <li>○대외기관의 정보연계 제공</li> <li>○위변조 자료수집 분석, 관계기관과의 자료 공유, 국제교류 및 산하기관 전파 공문</li> <li>○출입국자 통계 개정편람</li> </ul>	정보팀
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부소속 공무원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 조치</li> <li>○법무부소속 공무원 재산등록 중 금융조회 및 재산등록</li> <li>○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자료</li> <li>○선물신고제도안내 및 선물 이관</li> <li>○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li> <li>○병역사항신고 안내 및 병역사항신고의무자 관련 인사자료</li> <li>○부조리 신고관련 보상금 등 지급과 관련한 자료</li> <li>○법무부 검찰위원회 관련 자료</li> <li>○검찰청에 대한 감사자료</li> <li>○정보보고 및 검찰사무보고 관리</li> <li>○감찰활동을 통해 수집된 비위자료</li> </ul>	감찰담당관실
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원 위탁민원 처리</li> <li>○일상감사결과 이의신청</li> <li>○소속기관 등 감사결과 이의신청</li> <li>○공직기강확립추진 관련 공직기강 유공공무원 공적조사</li> <li>○공직자 행동강령</li> <li>○공무원 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관련</li> </ul>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수당신청서, 공제신청서 등 급여 신청자료</li> <li>○임대주택 입주 신청, 입주예정자 명부, 고지 및 계약, 퇴거신청 및 계약해지</li> <li>○선택적 복지신청서</li> <li>○정부보관금납부서, 정부보관금 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li> <li>○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신원조회, 인가증 교부 및 회수·파기</li> <li>○각종 출입증 발급신청서, 차량출입증 발급 요청,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청사출입증 발급요청서</li> </ul>	운영지원과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정보는 제외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교 정	수용자 위탁·외부통근 작업업무	외부기업체와 계약 등 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	직업훈련과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li> <li>○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사업활동에 따른 위해보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li> <li>○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li> <li>○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중에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li> <li>○ 특정업체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li> </ul>	각 부서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적동포 관련 자료 및 책자 편집·교정</li> <li>○ 외국적동포 정책 최종안</li> </ul>	사회통합과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각 부서

###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청구인과 정보제공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li> <li>○법무시설 개발 등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각 부서
출 입 국	○외국적동포 관련 정책 수립	사회통합과
운영지원	○공유재산 매각 공고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 V. 주요 결정 사례



1. 법무부 주요 결정 사례

2. 비(부문)공개 대상 내부규정



열려 있는 **窓**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 1 법무부 주요 결정 사례

### 가. 공개 사례

☼ 교정관련 부문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지침		청구정보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예규 제816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동 지침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2	고충처리반 설치운영지침		청구정보는 '수용관리 업무지침(예규 제816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동 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3	수용자 분류수용지침		청구정보는 '수용관리 업무지침(예규 제816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수용관리 업무지침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4	귀휴사유 등 지침		청구정보는 '귀휴시행규칙'으로 특정함. 청구정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 '08.12.22.)에 흡수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지만 동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해당부분을 공개함
5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청구정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 '08.12.22.)에 흡수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지만 동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해당부분을 공개함
6	전화사용 관련지침		청구정보인 '수용자 전화사용 지침'이 '수용관리 업무지침(예규 제816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수용관리 업무지침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7	수용자 생활용품 급여지침		청구정보는 법무부 예규 제834호('08.12.22.)로 폐지되었지만 폐지된 지침을 공개함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8	기증금품 관리지침		청구정보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예규 제816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해당부분을 공개함
9	수용자 교회 및 복지활동 지침		청구정보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예규 제816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해당부분을 공개함
10	수용자 열람도서규정		청구정보인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예규 제816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11	수용자 이송지침		청구정보는 '수용기록업무 등에 관한 지침(예규 제820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수용기록업무 등에 관한 지침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12	벌금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관한 질의 회신(보안일 61411-599, 2000.4.7)		청구정보는 '수용기록업무 등에 관한 지침(예규 제285호, '09.5.29.)'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수용기록업무 등에 관한 지침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13	계구 규격 및 사용방법 규칙		청구정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 '08.12.22.)에 흡수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지만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행 규칙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14	수용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 본격 운영지시 통보		청구정보는 '수용관리 업무지침(예규 제816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수용관리 업무지침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15	위탁작업 운영지침		청구정보인 '위탁작업 운영규정'이 '교도작업 운영지침(예규 제838호, '08.12.22.)'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교도작업 운영지침중 해당 부분만 공개함
16	재소자 의약품 관리규정		청구정보인 '수용자 의약품 관리규정'이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예규 제821호, '08.12.22.)'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중 해당부분만 공개함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7	명적업무 처리지침		청구정보는 '수용기록업무 등에 관한 지침(예규 제820호, '08.12.22.)'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수용기록업무 등에 관한 지침중 해당부분을 공개함
18	수용자 작업상여금 지급 규정		청구정보는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지침(예규 제839호, '08.12.19.)'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지침중 해당부분만 공개함
19	수용자 건강진단 규칙		청구정보는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예규 제821호, '08.12.22.)'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중 해당부분만 공개함
20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청구정보는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으로 특정함
21	교도관 예절에 관한 규칙		청구정보는 '교도관 및 경비교도 예절 규정'으로 특정함
22	영치품 관련 규정		청구정보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으로 특정함
23	자비부담물품 관련 규칙 등		청구정보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으로 특정함
24	수용자 급양에 관한 규칙		청구정보는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으로 특정함
25	수형자 직업훈련개발 운영 지침		청구정보는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으로 특정함
26	소포물 및 영치품 관리규정		청구정보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으로 특정함.
27	수용자 급식관리 위원회 규칙		청구정보는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으로 특정함
28	○○구치소에서 실제 가석방 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규정 전부		청구정보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규칙'으로 특정함
29	교정시설 CC-TV 규칙·법령		공개된 '형집행법' 및 '교정시설 전자경비시스템 운영지침'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부분만 공개함
30	교도소 CC-TV 설치 목적 및 관리규정		공개된 '형집행법' 및 '교정시설 전자경비시스템 운영지침'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부분만 공개함
31	조사 및 징벌 수용실 감시 카메라 설치규정 및 근거		'형집행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부분만 공개함
32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33	계구사용 절차 및 법적 근거		
34	교도관복제규칙 개정시달 문서		
35	법무부 보안업무내규		
36	금치처분중인 수용자의 집필 관련 지시		
37	에너지절약 계획표 및 시행표		
38	교정관련 법무부훈령 및 예규목록		
39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40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41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 지침		
42	수용자 병사(거실치료실) 운영 지침		
43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44	수용자 1인당 영치품 휴대 기준		
45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46	수용자 운동관련 규정		
47	교정기관 직원회 운영지침		
48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9	공무원 징계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규정		
50	공무원 징계관련 양형감경 기준		
51	공중보건의 복무규정		
52	수용자 처우 규정 중 난방에 관한 규정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54	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55	정신감정유치를 받는 동안 정신감정유치자의 처우관련 규정		
56	법무부 예규 및 훈령 목록		
57	법무부 보안관리과, 교육 교화과 및 보건의료과 훈령· 예규(2007.6.~현재)		
58	수용자 외래진료비에 대한 관비와 자비지불에 대한 규정		
59	부패 관련 지시 및 자체추진 계획		
60	불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61	4부제에 따른 수용자 처우 개선내용과 토요일 운동 지침		
62	본인의 영치품목 대장 일체		
63	본인의 보고문 제출내역		
64	수용증명서 발급 보고문		
65	청구인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6	청구인의 청원서 접수 및 발송 청원부		
67	개인 일일급식 정량 및 개인 물품 지급기준		
68	통합방송 송출일자 및 프로 그램		
69	청구인의 거실배방 지정표		
70	가석방예정자 서약서 본문 내용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71	2004년, 2005년 가석방허가자의 누진계급별· 연령별·형기별 현황		
72	법무부 가석방 대상자 신청 및 허가 건수(2004~2006.7.)		
73	2006년 분류 및 누진현황 보고		
74	청구인 관련 민원처리대장 기록		
75	수용자 출정관련 출정일지		
76	본인의 형집행 지휘서		
77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		
78	복지지원과 수용자 급양 공문서철 색인목록		
79	법원 등에 제출한 양형자료 통보내역		
80	2008.5.20. 재판기록열람, 등사신청 접수 확인서		
81	청구인 소송서류 관리사항		
82	본인 산업설비 훈련시 성적표		
83	○○교도소 관용도서목록 및 사동과 공장에 비치된 관용도서 목록		
84	2004년, 2005년 범죄백서		
85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86	법무부장관 청원관련 조사자 직급, 성명		
87	본인관련 진술조서 및 자술서 일체		
88	본인의 징벌요구서		
89	금치수용자에 대한 운동 실시 지시		
90	청구인의 조사기록(진술서, 자술서)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91	2006년 하반기 징벌집행 건수		
92	2007.9.11. 조사한 본인의 진술조서		
93	정보화교육 운영일정 및 세부계획		
94	2007.9.3. 조사실에서 조사 받은 본인 사건의 조사기록 일체		
95	2005년~2006년 수용 중 본인에게 사용되었던 계구 사용 내역		
96	2008.10.○.~10.□.까지 입원가료 중에 계호근무한 각 직원들 시간별 각 성명, 각 직급, 각 직위		
97	2006년도 총 징벌집행건수		
98	조사 징벌실 비치물품목록		
99	수용자가 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약품명 일체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약품은 건강보험공단 보유 정보를 적극적인 공개차원에서 우리기관에서 공개
100	사약품에 대하여 보험수 가로 책정된 약품명		”
101	본인의 건강진단부		
102	청구인의 진료기록부 (의무기록부)		
103	청구인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104	의무과 근무자의 직급 및 성명		
105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한 치료비(자비, 관비)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06	청구인의 의료비 사용 세부 내역(관비)		
107	○○교도소 의료비 예산 지출내역		
108	본인의 형 집행 정지 당시 의무과 진단서 사본		
109	수용자 자변약품 목록과 가격		
110	수용자 관급약품 목록		
111	○○교도소 의무과 예산 사용 내역		
112	○○교도소 방역용도 예산 집행 내역		
113	현 교도소 의무과장 근무 체결 전임, 겸임 여부		
114	○○교도소 임상연구비 지급 내역		
115	○○교도소 의무과장 및 의무과 직원 직제표		
116	○○구치소 외부병원 신청 인원		
117	청구인의 2006년 건강검진 결과표		
118	○○구치소 의료기기 보유 현황, 의료기기 성능, 의료기기 점검일지		
119	○○교도소 보건과 수용자 개인 의료비 예산(2008년)		
120	2008.6.18. 입소 후 채취해 간 혈액의 사용처 및 용도에 관한 명세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21	청구인의 의무과 관약지급 현황		
122	약값 선정방법		
123	자변약품 구매시 정찰가격 및 할인가격에 대한 정보		
124	보건의료과 수용자지급약품 목록		
125	교정시설내 방역실시현황		
126	자변약품 구매입찰 계획		
127	거래의약품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128	입소 당시 신분장에 기록된 청구인의 치아상태 등		
129	수용자 일상용품 급여기준		
130	수용자 사약품 가격조회 및 회보		
131	2007.11.25.~2008.2.27. 까지의 청구인의 차입약품 신청 및 허가부		
132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 등의 관리·사용방법, 영치금 이자의 사용방법		
133	2004년~2005년 치과 보철· 보수 가격표		
134	청구인의 작업일과표		
135	수용자 주·부식 급여결과		
136	청구인의 약품 소모대장		
137	청구인의 의료처우 내용		
138	수용자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적용기준 통보		
139	청구인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비용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40	○○교도소에 약을 납품하고 있는 제약업자의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소		
141	수용자 의료위원회 적정 운영 지시		
142	수용자 건강보험급여 실시 계획 시달		
143	X-ray 필름		
144	○○교도소 피복 및 담요 재활용실적		
145	○○구치소 폐지매각대금 사용내역		
146	○○교도소 생리대(쓰레기) 처리과정		
147	○○구치소 재활용품관리 현황		
148	○○구치소 소모품대장		
149	○○교도소 교도작업생산 현황(작업장별 작업량 현황)		
150	수용자 주·부식비 1인당 1일 지급액		
151	수용자 생활용품 지급현황		
152	청구인관련 자변서적 공급 목록		
153	청구인의 영치금 차입원표		
154	생필품 지급기준		
155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 판매 수익금 송금 내역		
156	○○교도소 직원회 운영 경비 집행내역		
157	○○교도소 예산집행내역 (각과 포함)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58	우량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물품목록		
159	수용자 1년 식비, 교도관 1년 식비		
160	청구인 작업상여금 입출금 내역		
161	○○교도소 신문공급 명세서		
162	○○교도소 일상용품 지급 내역		
163	수용자 자비부담관련 구매물 가격표		
164	○○구치소 사책 구매시 할인율(계약서)		
165	자변물품 구입업체 및 계약서		
166	○○지소 교육교화계 주요 문서 목록		
167	공급품목 구입단가 및 판매 단가표 공급품목규격서 및 세부사항		
168	소송서류 관리사항		
169	정보화 교육 및 국가 기능 시험 자격기준		
170	청구인 영치금 사용내역 (영치금 대장)		
171	자비부담물품 총 매출 및 수익금		
172	교도소 구입 신문사별 구입 관련 내역		
173	기동대 근무자 성명		
174	입소시 촬영한 사진		
175	정보화교육 평가분석 회의록		
176	토요휴무 운동시행관련 내부 문서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77	청구인의 구속영장(신분장 편철)		
178	형기종료 예정일		
179	○○교도소 자가용 전기 설비 안전점검표		
180	○○교도소의 수질검사의 자료		
181	○○교도소 수용자 식수 수질 기준 및 수질검사 내역서		
182	○○교도소 전기세, 수도세, 월일별 상세내역서		
183	00구치소 장애인 수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완한 시설		
184	00교도소 중증환자 및 장 애인 수용 현황		
185	변호사 접견 날짜(입소 후 현재까지)		
186	청구인의 접견 횟수		
187	청구인의 접견기록 내용		
188	○○교도소 2007년 수용자 부식물 영양점검 기록표		
189	○○교도소 수용자 구매 물품과 접견물 판매 매출 총액		
190	수용자 식품 입찰과 관련 하여 입찰공고한 날짜, 단가		
191	본인이 수용중 내보낸 위임장 및 합의서 일체		
192	2006.~2007. ○○교도소 관급일상용품(내복, 양말, 운동화, 수건 등) 지급 인원과 지급 품목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93	교도소에서 구입하는 신문사별 구입관련 내역		
194	○○교도소 출소예정자 기초 생활보장 보호현황		
195	본인의 접견자 명단		제3자인 접견인의 양해를 구함
196	청구인관련 거실 및 공장 지정 통지부		
197	○○구치소 서적공급업체 선정 기준		
198	○○구치소 교화행사 예산 집행내역		
199	수용자 주·부식관계 계약 체결 방식 및 계약조건		
200	2007년도 현재 판매하는 모든 교도작업제품 원가 계산 자료		
201	본인의 연출기록(2007.6.12. ~6.20. 까지, 2007.7.23. ~7.26. 까지)		
202	조직기구표		
203	본인 우편물 수·발신 대장		
204	교정협회 공급품목 및 지정 물품		
205	입소때부터 현재까지 출역 과정		
206	성○○씨에 전체 면회 기록 (접견일시, 접견시간)		
207	2008년도 ○○교도소 수용자 피복류 및 생활용품 자체 수급 계획		
208	2008년도 ○○교도소 수용자 피복 및 생활용품 지급현황		
209	청구인의 작업상여금대장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210	수용자 지급 주·부식 예산		
211	소모품, 비소모품 관리대장		
212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품목 구분		
213	각 공장 작업명 및 위탁, 직영, 전일 근로 등에 대한 구별내역		
214	정보화 교육 및 국가 기능 시험 자격기준		
215	수용자 주·부식관련 서류 일체(규칙, 지침 등)		
216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 시설에서 소정의 교도작업 제품 제작에 사용된 원자재의 월별 원가		
217	책임감독자 직급, 성명		
218	○○교도소 기결독거 기준 및 허가대상		
219	독거수형자 자격요건		
220	관용부 요원 선정기준		
221	기초생활보장 특별연계 보호 대책		
222	기초생활보장보호 현황보고		
223	과자류 빵 종류와 납품회사		
224	과일 납품내역		
225	운동용품 구매와 관련 업자 선정방식		
226	수용자 귀가여비 등 지급 현황		
227	취사장 물품 내역		
228	연도별 피복비		
229	본인 벌금형에 관한 형순서 변경 지시서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230	법무부에서 ○○교도소에 배정한 수용자 체육대회 예산 내역(2003년~2006년)		
231	수형자의 기술 및 정보화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유의 사항 시달		
232	2005년도 경상이전비 중 작업상여금 총액		
233	순회점검 관련 점검목적 및 점검관 직위·성명		
234	○○구치소에 지급된 직원 월급 관련 재배정액		
235	각 과 업무분장표		
236	부식물 생산명령부·조리 내역서		
237	양곡 소비량, 비상식량 지급 및 재고량(2005년~현재)		
238	부검 결과서 (청구인 : 망자의 처)		
239	수용자 부식물 영양 점검 기록표		
240	소송서류 수·발신 내역		
243	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		
244	부식물 차림표 및 소요내역서		
245	가족만남 선정기준 및 이용 계획 등		
246	복지지원 예산 수용자 1일 급식비		
247	각 부 정·부당직 직급 및 성명		
248	2005.1.1.~2008.9.25. 문화 관광부에서 ○○교도소에 기증한 도서 목록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249	2005.1.1.~2008.9.25. 도서 담당관리자 변동사항 및 명단		
250	취사장 식기류 현황		
251	각 사동 및 작업장별 온수통 지급현황		
252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 명세서		
253	수용자 구매실적 현황 자료		
254	2006~2008년도 ○○구치소 월 전기요금		
255	월별 수용자 신문사별 신문 구독 현황		
256	○○구치소에 지급된 물품 구매 관련 재배정액		
257	에너지 관련 지시공문		
258	교정시설 수용자 구매실적 현황자료 (공급관리비 수입명세서)		
259	배식시 사용하는 국통 및 찌게통에 대한 제품명 등		
260	2008년 동절기 난방계획서		
261	전기요금(2006년~2008년)		
262	전일근로공장 월별 변동 인원수(2008년)		
263	2006.7.~2008.7.까지 수용자 에게 공급한 과일가격		
264	출역자 기준(관용부)		
265	수용 거실 지정현황(청구인)		
266	2008.8.7. 거실수검직원 명단과 수검일자		
267	2008년 아이스크림, 수박에 관한 입찰내역서 및 판매 수량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268	복지지원과에 1년 예산 및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지급방법		
269	부식 1일 기준하여 개인 부식비 및 몇 g씩 집행되 는지 확인된 문서정보		
270	출소자 만기복, 신발 등 사용내역서 및 법무부에서 지급되는 수용자 담요 현재 남은 갯수		
271	도자기작업장 1인/1일 작업량 및 월별작업량, 위탁업체명 및 작업공정별 명칭		
272	청구인의 영치금 내역(입금 및 차입내용 및 사용내용 증명서)		
273	구매물 판매 수익금 내역		
274	구매 월별 공급일지		
275	2006년~2008년도 일일 열량 분석표와 각 메뉴별 열량 분석표		
276	2007.1.1.~2008.12.30. 00교정청 관할 교정시설 수용자 구매실적 현황자료		

※ 출입국행정관련 부문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관련 정보		
2	본인 동의 없는 본인의 개인 정보 조회 내역		
3	개인의 출입국기록을 타인이 무단 열람하였는지 여부		
4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의 근로계약서		
5	본인의 과거 체류신청서류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열람		
6	제주도내 거주 외국인 수 (국가별 교포 포함)		
7	충청북도 체류외국인 현황		
8	과거 본인의 사범심사 서류		
9	청구인의 사증신청서류		
10	2004년~2005년까지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한 외국인 유학생 고용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실적 및 관련법규정		
11	부산, 마산, 창원, 울산, 포항, 대구 지역의 구(區)별 외국인 수		
12	불법고용 중국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송부서류 중 여권사본 및 거민증 사본		

☼ 보호행정관련 부문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	지명수배 사유, 집중보호 관찰지정고지서, 소변검사 결과 등		
2	○○보호관찰소 문서목록		
3	청구인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상황부 내역		
4	판결전 조사에 대한 시행령 및 지침 내규 일제 열람요청		
5	판결전 조사기록 존재 유무 여부		
6	교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 및 교화위원전체 인원수		
7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규칙		
8	청구인의 특수우편물 수· 발신대장, 영치금 대장		
9	치료감호소 내규 중 공개 가능한 내규		
10	2007년 치료감호소 예산 사용계획표 및 9월 현재 까지 예산집행 내역		
11	2007년도 약물환자 주· 부식 집행내역		
12	현재 투여하고 있는 약의 성분, 효능		
13	연간 직원 피복비 관련 예산 및 지급되는 의류 수		
14	개청~현재까지 약물재활센터 에서 시행한 공사(명칭, 기간, 시공업체, 공사비)		
15	연결복도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목적, 경비, 기간 및 이에 관련된 서류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6	청구인이 2006.6. ○○병원 에서 치료한 영수증		
17	치료감호소 권익체계 규정		
18	치료감호법,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19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		
20	2008년도 물품운용관의 소모품대장 및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21	중요물품 이력카드 부분		
22	2007.7.27.~2007.10.28. 까지 발송한 청구인의 서신 일체(책, 소포 포함)		
23	치료감호소 수감인 처우 규정		
24	청구인의 우편물 수·발신 내역		
25	2007년 상·하반기 예산 집행 내역서		
26	종교단체 후원내역(종파별)		
27	본인의 의료 차트에 첨부된 혈액검사지		
28	치료감호소에서 배정받은 2005년~2008년 총예산액		
29	청원서(직권심사종료) 사본		
30	2008.9.17.~2008.9.30. 치료감호소에서 수·발신된 청구인의 서신 내역 일체		
31	입원 진단서		
32	1996년~1999년 의사소견서 및 기록		
33	개인에게 지급되는 품목과 지급회수에 대한 규정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34	퇴원 후 외래 진료 투약일지		
35	2007.4.~5. 치료감호소 부 식물별 현 단가와 월별 부 식물 총예산 집행내역		
36	환자식당 부식 품목 및 입찰 단가		
37	진단서 및 개인기록 일체		
38	X-Ray촬영한 기사 직급, 성명, 촬영사진		
39	청구인에 대한 처방내역 및 검사기록		
40	타소서 투약받은 기록일지		
41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 기준		
42	2008.4.25. 19 : 00 검사 병동 간호사실에서 근무한 보호사 및 4.26. 06 : 00 근무한 보호사의 인적 사항 (직급, 이름)		
43	2008.4.28. 간호사 등 직원 에게 진찰과 외래진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묵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유		
44	본드·부탄가스에 대한 치료 감호소 개소부터 2008년 현 시점까지 조사·연구한 자료 제목 전체		
45	2007.6.19.~2007.8.31.까지 의무과에서 치료, 소견서 받은 사항		
46	치료감호법 및 동법 시행령		
47	약물환자에 대한 처우 및 관리지침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48	2008.4.26. 과 2008.3.18. 촬영한 X-ray 사진 및 상해 사건 후 기록한 진료내역		
49	본인 의료진단부에 첨부 되어 있는 정신과 진단서 일체		
50	2001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계상된 근로보상금의 지급 사실 내용과 전 병동에 동일이 적용한 사실내용		
51	정식재판(신청)에 관한 법률		
52	위증에 관한 법률 및 무고죄에 관한 법률		
53	치료감호소장의 행정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수용자 상담 횟수와 날짜 (2007.1.~현재까지)		

☼ 본부관련 업무부문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지침		
2	수용자 이송지침		
3	행형법 개정내용		
4	교정관계 법령목록		
5	교정관련 훈령·예규 목록 대장		
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지침		
7	교정시민 omb즈만운영규정		
8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관련 서류일체		
9	무인접견시스템 시범운영지침 및 무인접견시스템 운영지침		
10	검찰사건사무처리규칙		
11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예규		
12	수용자 통합교화방송 운영 계획 및 주간방송계획부		
13	법무부령 목록		
14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		
15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에서 부여한 사건번호		
16	위생관련 규정과 지침(재소자 에게 지급된 물품에 대한 위생 및 건강관련 규정과 지침)		
17	2006년도 결산 재무제표 내역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18	2007년도 법무부예산 (회계별 예산규모내역)		
19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 원인행위액 월별 정리부		
20	법무부소속 공무원 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21	교도소 직원회 운영지침서		
22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23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 운영지침		
24	교정위원 운영지침		
25	최근 5년간 검사 임용 실적 (직급별, 연도별) 및 일반 직중 변호사 채용 현황		
26	법무부 교정국의 각 교도소별 의료전문인력 인원수(공중 보건의 포함)		
27	마약류보상금 지급현황		
28	수용자 교화방송 지침		
29	수용자 급양 관리지침		
30	직원복제지침표		공개청구한 정보를 “교도관 복제규칙”으로 특정함
31	치료감호소 감호자의 근로 봉사지급규정		
32	2003년이후 5년간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관련 범죄 내역 등		
33	난민지위인정신청 및 인정 건수, 출신지역 및 국가별 현황		
34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35	본인이 제출한 국적신청 서류사본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36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기간		
37	관보에 게시된 국적상실자 및 국적이탈자 명단		
38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 처리현황(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통고처분, 과태료 구분)		
39	외국인 사망자 현황(연령별, 체류자격별, 국가별)		
40	유학(D-2) 및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소지자의 국가별 국내 체류현황		
41	1,000명이상 외국인이 등록된 지역(시·군·구별)		
42	국민 행선지 국가별 출국 현황		
43	수용자 정보화교육 규정		
44	○○시의 각 동별, 읍면별 국적미취득 이주여성 수와 국적취득 이주여성 수		
45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 결혼가정/외국인근로자 자녀 취학 및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통계		
46	수용자 교회 및 복지활동 지침		
47	수용자 1인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평수		
48	비상대기 숙소 관리규정		
49	국내 난민지위인정 신청 및 인정현황		
50	법무부 소유 관용차 현황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51	2006년 사이버교육센터의 대국민 법교육 사업 실시 현황		
52	부서 명칭이 포함된 법무부 조직도		
53	2006년 독일월드컵 TV시청 등 관련 지시(교육교화과 - 2103, 2006. 5.23)		
5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55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 교도소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서		
56	1980년 이후 각 연도별 사형집행인원 및 확정인원		
57	구치소, 교도소 관련 예규· 훈령·지침·지시·세부규칙 목록		
58	2006년 7월말 현재 기초 자치단체별 등록외국인 현황		
59	2004.8.~2006.8.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처벌받은 기업체의 수		
60	연도별 수용자 폭행사고 현황		
61	2000년~2005년 국적취득자 현황 및 중국인 비율		
62	외국인 사망자 현황(연령별, 체류자격별, 국가별)		
63	국내체류 영국인 현황		
64	국제수용자이송법 및 유럽 수형자이송협약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65	긴급원호비 지급내역		
66	2008년도 교도작업제품 공급 가격		
67	각 교도소 직업훈련과정 및 시기		
68	장관이 정하는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 책정 내역 및 외부통근작업 대상자 선정기준		
69	국내체류외국인 및 외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70	법무부 출입기자 현황		
71	가석방 적격여부 심사기준		
72	변호사시험에 대한 자격 조건 및 결격 사유		
73	정부권장형 태극기 구매 내역 확인		
74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현황		
75	○○교도소가 법무부에 청구한 동계지급 품목과 솜이불 청구 및 배부현황		
76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 지역별, 연령별 통계		
77	전국사무실별 법조인(공익 법무관, 변호사 구분)의 수		
78	법원의 법률구조결정시 공단의 처리방법		
79	민사소송구조의 청구원인 (내용)별 통계(2000.~2007.6.)		
80	공단소속변호사 인원수 1인당 사건배당건수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81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 변호사 현황		
82	개인회생 및 파산실무자료		
83	공단소속 변호사 지위, 평균 근속년수, 채용절차		
84	법률구조제도와 관련된 법규, 훈령, 규정, 지침 목록 및 목차		
85	공단소속변호사 1인당 평균 급여액		
86	형사소송구조의 혐의(죄명) 별 통계(2000.~2007.6.)		
87	민사소송구조의 청구원인 (내용별 통계(2000.~2007.6.)		
88	1995년~2007년 무호적자 취적현황		
89	국내체류외국인의 법률구조 내용 및 실태		
90	법률구조공단의 정관, 취업 규칙, 인사규정		
91	법률구조공단의 실무자료집 현황		
92	2006.1.~2008.9. 개인회생, 파산신청현황		
93	상담자 본인 전화상담기록부		
94	2005년~2006년 민사사건 수임건수, 승소율		
95	공단 갱생보호기금 기증 현황		
96	공단 임대주택 공급물량		
97	임대주택 혜택범위		

## V 주요 결정 사례

일련 번호	청구정보	비(부분)공개 근거	비(부분)공개 사유
98	갱생보호 시설 현황		
99	출소자 생활지원금 항목 등		
100	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갱생보호 수혜내용 안내		
101	갱생보호 수혜관련 지침		
102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103	출소자 주거지원사업안내		

##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관련

※ 부분공개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기획조정실	역대 법무부장·차관의 역대순, 성명, 재임기간, 퇴직사유, 최종학력 및 출신학교명	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청구 정보 중 역대 법무부장관 및 차관의 역대순, 성명, 재임기간은 공개하고 그 외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함
기획조정실	2009년 현재 비공개 훈령·내부규정(지침) 목록(통계·현황자료)	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비공개 훈령 등의 목록은 공개하되, 그 외의 통계·현황자료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함
교정본부	1990년 이후 수용자 자살 사고 관련 통계자료	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1996년 이후의 자살수용자 인원현황은 공개하고 그 이전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자료로서 비공개함
교정본부	1990년 이후 수용자 자살 사고 발생내역	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2000년 이후 자살자 현황은 공개하고, 그 이전 자료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함
교정본부	교도작업제품 분기별 지정품목 공급실적 (2004~현재)	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공급실적은 분기별로 받지 않고 연간실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연간 공급 실적로 대체 공개함
교정본부	교정시설에서 교도작업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 및 납입 영수증 일체	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교도작업 제품의 판매대금 전액은 국고로 입금되며 별도로 이익금에 대한 납입 영수증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자료로서 비공개함
교정본부	담요 구입가, 판매가 및 담요 차익금 사용처	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담요 차익금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하고 구입가 및 판매가에 한하여 공개함
교정기관	각 종파별 자매단체명 및 수용자 자매자 총수 선정규정내역	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청구정보중 각 종파별 자매단체명은 우리기관에서 직무상 취득 또는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비공개하고 수용자 자매자 총수 선정규정내역에 대하여만 공개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신청 유형별(직접상담, ARS, FAX상담, 인터넷) 신청 건수	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청구정보중 “FAX 상담”은 우리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비공개함.

## ☀ 비공개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기획조정실	법무부장관·차관의 수송자에 대한 표창 수상 내역	법 제2조 및 제3조	법무부장관·차관의 수송자에 대한 표창 수상 내역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함
교정본부	교정협회에서 관리, 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 (개별품목)	법 제2조 및 제3조	청구정보의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 (개별품목)의 정보는 우리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하며 일선 기관으로 문의 바람
교정본부	자비부담 물품에 대한 판매금액 및 순수 이익금	법 제2조 및 제3조	자비부담 물품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생산하여 수송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협회의 주문에 따라 납품하고 수송자들에 대한 판매는 교정협회에서 하고 있어 각 생산품들의 판매금액 및 순수이익금에 관한 자료들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공개함
교정본부	교정시설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시행방침 및 상부관서의 지시 공문 일체	법 제2조 및 제3조	정보공개업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행지침 및 지시공문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함
교정본부	교도작업 생산품 중 '수송자 사용 전기 면도기'에 대한 공산품 품질안전 검사 승인 내역	법 제2조 및 제3조	건전지(1.5V 2개)만 사용하는 전기 면도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이 아니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품질표시공산품 및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아니므로 청구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공개함
교정본부	배방 및 시찰업무(교정 831-8437) 이후에 개정된 사항	법 제2조 및 제3조	'배방 및 시찰업무의 철저' 지시공문은 1971. 5. 12. 제정된 이후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비공개함
교정본부	교정협회에서 발행한 교도소 구매 판매 수익금에 대한 내역서	법 제2조 및 제3조	공개청구한 정보는 우리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비공개함
교정본부	교정시설에 기증하는 단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법 제2조 및 제3조	공개청구한 정보는 우리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비공개함
교정본부	교정본부 기관운영비 집행 내역서	법 제3조	청구정보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예산 및 집행 대상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청구인과의 관구교감의 면담기록	법 제2조 및 제3조	관구교감과 면담시 모든 면담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과의 면담일시 및 기록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함
교정기관	○○교도소 2동 하층 근무자 교사 ○○○의 일일출원사항 기록 노트	법 제2조 및 제3조	사동 근무자가 사동 동정을 메모하는 개인 메모장으로 공문서라 볼 수 없으며 일정시간(근무 교대 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비공개함
교정기관	조직폭력사범 관련 총 인원 및 취업장 배치 현황	법 제2조 및 제3조	조직폭력사범의 취업장 배치관련 정보는 없으며, 총 인원 관련 문서는 보라미시스템상의 '조직폭력사범명단'이라는 문서가 있으나 개인의 신상 관련 정보를 제외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음
교정기관	자변약품 검사결과 보고서	법 제2조 및 제3조	청구정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함
교정기관	2004~2005.7월까지 출소 수용자 지원용 의복 및 신발에 대한 기증, 사용, 재고내역	법 제2조 및 제3조	청구정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함
기획조정실	법무부 훈령·예규 목록 등 행정규칙 개정 및 개폐된 내용에 관한 사항	법 제3조	청구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청구정보를 명확히 하여 재청구하는 경우 추후 공개여부 검토 예정임
교정본부	법무부에서 각 교정 시설에 지시한 공문·지침 목록	법 제3조	청구한 정보는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청구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재청구하신다면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음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물품지급 현황	법 제3조	청구정보는 내용이 불특정하고 지급 범위 등이 광범위하므로 지급대상, 품종 및 지급 기간 구체적 명시하여 재청구 요구함
교정본부	청구인이 2000년 이후 교도소간 이송되었던 이송신청문서 및 이송 지휘 명령서 등	법 제2조, 제3조 및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2004년 이전의 이송문서는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2004년 이후의 이송관련 문서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형의 집행 또는 교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침해 및 교정행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관련

### ☼ 부분공개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기획조정실	○○구치소 신축 관련 준공보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교정시설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국가중요 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설계도면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함
기획조정실	법무부 소속(산하) 위원회 및 위원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기획조정실	법무부 전체직원 징계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인 징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기획조정실	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부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의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고 나머지 위원회 운영 등은 공개
대변인실	법무부 출입기자 명단 및 연락처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중 연락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법무실	2008년도 제1차 사법 시험 시험위원 명단, 예산집행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사법 시험법 제18조 제2항	비공개 정보는 공개할 경우 사법시험 정답에 관하여 부당한 시시비비가 제기되고, 시험위원의 위촉이 곤란해지며, 대다수 선의의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고, 법조인력과 예산집행내역은 공개
검찰국	퇴직한 전국 검사장급 이상의 재직기간 및 퇴직일자와 근무처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는 성명, 주소, 연락처 및 현 근무지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범죄예방 정책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구성 형식, 회의 개최횟수, 수당, 위원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청구정보중 위원명단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 신상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공개함
교정본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지출원인 행위부 및 영수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청구정보중 사용내역에는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은 물론, 개인의 신분을 노출시켜 사생활 자유의 침해 우려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운영지원과	연구용역 발주내역(용역명, 소관부서, 계약자, 계약 금액 등) 및 연구진의 성명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청구정보중 연구진 성명은 이를 공개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함
교정본부	서울청 산하 청원조사관의 성명, 직위, 이력, 사진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는 청원조사관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성명, 직위는 공개하고 이력 및 사진자료는 비공개함
운영지원과	행정정보의 공표대상 목록 및 정보공개심의회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만 공개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명단과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제2조, 제3조	회의록은 대면회의시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서면회의에 대한 회의록은 부존재 자료로서 비공개하며, 참석자 명단중 외부위원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또한 비공개하고, 내부위원 명단만 공개

## V 주요 결정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수용자 징벌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징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개개인의 발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은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으로 위축되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리·의결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청구인의 신분장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처우 전반의 의견과 결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청구인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등 교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 독단의 자기 사용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자의 동태 시찰 등 교정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수용사동 검사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는 피청구인만의 필요에 의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작성된 교정에 관한 사항이고, 수용시설 내에서 직무상 행한 직원의 명단이나 부정물품 색출 및 시설 이상유무 등의 내용은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해진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분류심리검사 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청구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조사관계 서류일체 (청구인 조사관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관련 사항, 조사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관련자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징벌위원회회의록 제외하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참고인·상대방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제외한 후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합의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관련 사항 및 합의관계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정보화 교육 및 정신 교육 외부강사 초빙 예산집행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외부강사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개별 상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
교정기관	종교위원 및 교화위원의 활동목적 및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관련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특별진급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관련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사건기록 및 전과기록 등 조회 회보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누설 및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교정기관	근무보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근무보고서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과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및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업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개연성이 없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함

## V 주요 결정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교도관 근무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 계구사용,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정문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사유 등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계구사용감독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칭호번호, 성명, 수용거실 등이 혼합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교정기관	민원, 소송서류 접수·전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어 타 수용자들의 소송 전달사항을 공개할 경우 진행중인 재판과 교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 부분을 제외한 후 본인관련 부분만을 공개함
교정기관	신분장 대출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대출직원과 대출목적 및 타 수용자의 칭호번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징벌집행 사건기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관련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목격자, 피해자, 참고인, 이해당사자(상대방) 자술서(진술조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관련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마약류사범 교육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형의 집행, 교정관련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교정기관	2005년 3월 ○○교도소 1, 2, 3동 하층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수용자 구매물품 신청 자료 중 개인 신상 자료는 삭제)사본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성명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수용자의 번호, 이름 등을 삭제하고 공개한다고 해도 앞뒤 정황상 식별이 가능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개인 신상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교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함
교정기관	보고문 접수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처우 전반에 대한 의견과 판단, 결정내용 등 교정에 관한 사항과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성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신분을 노출시켜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타수용자의 보고문을 제외한 청구인 작성의 보고문만을 공개함
교정기관	수용자 복지비 지원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과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및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수용자 출원사항 접수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처우 전반에 대한 의견과 판단, 결정내용 등 교정에 관한 사항과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성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신분을 노출시켜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타수용자의 보고문을 제외한 청구인 작성의 보고문만을 공개함
교정기관	각 부식별 공급계약 내용 및 납품업체 등록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청구정보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추후 있을 계약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계약에 임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납품 단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기관별 지급약품 품목, 각 품목별 입찰내역, 계약, 입찰공고문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청구정보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추후 있을 입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입찰에 응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납품 단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구매물품 단가 및 납품업체 선정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구매단가 산정 내용은 각 거실에 배포한 자체 공급품목 가격표에 공개되어 있어 이를 안내하는 것으로 공개에 갈음하고, 납품업체 선정기준은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업체선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소포물(차입품) 접수 및 검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수·발신인의 연락처 및 타 수용자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소 등 연락처를 제외하고 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정보공개처리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을 제외 후 공개
교정기관	민원처리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을 제외 후 공개
교정기관	장소변경 접견대장 (접견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접견인 및 수용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을 제외 후 공개
교정기관	서신대장 (특수우편물 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수·발신인의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소 등 연락처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간행물 접수 및 배부 장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타수용자의 수번, 성명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함
교정기관	문예용품 지급허가자 명단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허가받은 수용자의 칭호번호,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
교정기관	무의탁 출소자 귀가 여비 지급 관련철 (출소자귀가여비 및 피복지급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수급자의 이름, 수번, 죄명 등이 혼합되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 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함
교정기관	수용생활지원금품접수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 있는 수번, 성명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이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
교정기관	전화사용 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청구인의 정보 뿐만 아니라 타 수용자의 전화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

# V 주요 결정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수용자 사회병원 이송진료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수용자의 서명, 칭호번호, 질병명 등 개인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교정기관	외부병원 이송자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외부병원 이송자의 칭호번호, 성명, 죄명 및 질병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및 외부진료 병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의료용품 허가수용자 (개인별)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이름 등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의료보조기 사용현황(수량)만을 공개
교정기관	자변약품 수불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이름, 수번, 죄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 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교정기관	수용자 외래진료비 국가부담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성명, 질병명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성명, 칭호번호 등만 제외하고 공개
교정기관	교회기자재 관리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후원자의 성명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후 공개
교정기관	교회행사 계획부 및 시행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관본도서 대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기증금품 접수·관리 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작업지정 통지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수번, 이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함
교정기관	작업상여금 지급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수번, 성명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함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공개하고 위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외부위원에 관한 정보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교화상담자 지정 및 감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이름, 수번, 죄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 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교정기관	사동청소부 배치 및 이동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번호, 성명, 죄명, 형기, 형기종료일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 진료 및 각 병명별 소요예산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청구정보에는 외부병원 이송자의 칭호번호, 성명, 죄명 및 질병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및 외부진료 병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교정기관	위탁업체 생산단가, 판매가 및 그 사용 내역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청구정보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함

## ☀ 비공개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기획조정실	근무성적 평정점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 평정규정	청구정보는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 '04. 6.11.) 제13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분류되어 관리 되고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함
법무실	제48호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 명단 및 직책(성명, 근무 직역 기타 신상)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판례에서 평가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취지, 시험제도 보장의 중요성 및 공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어 비공개함
법무실	사법시험답안 채점 내역과 채점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청구정보는 사법시험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본부	전국 교도소 재소자 수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수용인원 등이 공개될 경우 그 시설의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어 위기상황발생시 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음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체류자격 관련 세부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청구정보는 체류외국인의 감독,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익은 물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독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교도소 수용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청구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및 형의 집행·교정 등에 관한 사항들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또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제한구역 출입 허가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국가주요보안목표시설의 출입자 및 출입허가사유 등이 기재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시설의 방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출입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전기온돌 판넬 공사 업체 선정 자료, 공사 업체의 입찰서류 일체 및 공사비 내역, 작업 도면, 시방서, 공사 계약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청구정보에는 주요국가시설인 교정시설에 관한 사항,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시설 방호라는 측면에서의 이익과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입찰계약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시 자체심사 기준 및 단체관광객을 불법 체류자로 판단하는 심사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청구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함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의 입국거부 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청구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과 입국심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간의 외교마찰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입국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에 따른 입국 규제기간 및 그에 따른 법령 및 내부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입국금지 등 규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국민의 권리, 의무의 규정과 관련 없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지침이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함
검찰국	가석방심사위원회 구성 명단(최근 5년간)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위원의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V 주요 결정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귀휴심사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청구정보에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개개인의 발언내용과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신체 위해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교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위원들은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으로 위축되어 귀휴심사관련 의사결정 등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분류처우회의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청구정보에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수용자에 대한 분류처우기법 등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 개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은 물론 분류처우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의사결정 등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함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 금지·정지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출입국 금지·정지와 관련한 대상자 성명, 사유, 예정국가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출입국심사업무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범죄예방 정책국	전국 범죄예방위원의 이름과 직업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인 청구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원의 신체·생명 및 재산 등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의 신체·생명 및 재산 등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위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범죄예방 정책국	약물수강명령 강사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강사의 신체·생명 및 재산 등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강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검찰국	○○사건 관련 형사 사법 공조 협조공문 및 관련자료, 수사 진행 상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개청구한 정보에는 관련 형사재판 및 수사가 현재 진행중으로 공개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본부	교정기관(본부 교정국 포함)에 대한 국정 감사 내용 및 자료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는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국회의 국정 감사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범죄의 예방,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치료감호소	청구인의 범죄경력 조회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범죄경력조회서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함
치료감호소	치료감호 가중료 처분 심사 자료, 정신감정서, 진단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처분심사자료는 감호처분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신감정서는 법원의 명에 의하여 집행한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그리고 진료기록 등은 개인의 병명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감호처분 등의 직무수행 및 입원 중 치료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근무자 수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에는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근무 방법 등의 노출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심사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심사관련 자료는 감호처분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V 주요 결정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청구인의 개인 교화 상담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에는 내담자의 반응, 상담자의 주관적인 판단 및 조치의견 등 교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수용자 급수별 인원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는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교정업무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개인상담카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개인상담카드의 정보에 수용자와 직원이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처우상 참고 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상담업무의 효율적인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연도별 교정사고 처리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는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 할 경우 동종의 교정사고 발생 및 모방행위로 인해 수용질서유지 등 교정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조사 수용 중 기동대 비디오 촬영테이프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업무 집행과정 중 보안 사고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대처하고 각종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공익적 목적의 교정에 관한 내부적 보조 자료로서, 이를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 공개 하는 경우, 수용관리의 공익적 목적에 위배되는 등 그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보안장비 수불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에는 각종 보안장비의 명칭, 수량 등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직원교육 및 훈련 관련철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당해정보에는 수용처우와 관련된 내용, 수용관리의 기법 등 직원만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 공개시 공정한 교정업무 수행 및 처우 기법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본인 신분카드에 있는 문제수용자 동정보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는 각종 동태시찰 등 수용자의 신분처리, 교정처우 전반에 대한 의견과 판단, 결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수용자의 관리 등 교정업무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자기사용의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관구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는 관구책임자의 효율적인 수용관리 및 처우를 위한 정보 및 각종 보고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효율적인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감찰관실	2007년 이후 ○○국 감사결과 및 처분 요구서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청구정보는 감사·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의 집행, 교정 및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감찰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감찰관실	법무부 교정관련 감사에 대한 결과 및 징계 결정 기록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청구정보는 감사·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의 집행, 교정 및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감찰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감찰관실	2005년도 ○○교도소 행정감사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청구정보는 감사·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의 집행, 교정 및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감찰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범죄예방 정책국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 결정 심의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청구정보에는 범죄의 예방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또한 향후 있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분류처우 심사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에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심사분류로 그에 상응한 합리적인 개별처우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자료로 청원이나 고소 사항 등의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회의를 거쳐 분류급, 누진급, 심사자, 상담관찰사항, 처우사항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용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수용관리 내지 교정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 개인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보다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함
교정기관	교정협의회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청구정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발언, 결정 과정 등 향후 교정 위원들의 교정활동 등 발전적인 추진발향을 위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결정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청구정보는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기획조정실	’08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동 자료는 검찰국 업무와 관련한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과 교정, 보호 업무와 관련한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감독·규제·인사 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법무실	2005, 2006년 현재 교정기관 관련 국가 배상심의회 심의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본부배상심의회 회의록은 배상심의회 개최 후 개개의 배상신청사건의 책임성립여부 및 배상 범위에 대한 각 위원의 의견과 신청인의 이름 등을 기록한 문서이며 또한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감사관계철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청구정보에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 등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감사·감독 등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범죄예방정책국	2006년 이후 가석방, 가퇴원 허가·취소 자료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석방자·가퇴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본부	민원인이 법무부에 발송한 민원서신 조사 결과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조사내용에는 교정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국금지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출국금지 정보는 출국금지 처분내역 및 범죄 사실, 출국금지 사유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은 물론, 수사에 관련된 사항 등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진행중인 수사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호송시 계호계획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수용자 칭호번호 및 성명, 호송 경로, 보안장비내용 및 계호직원 등 호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 행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정보사항 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교도소의 CCTV 녹화기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교정시설에 설치된 CCTV는 수용자의 도주기도, 자살·자해, 소란행위 및 환자의 발생 등을 실시간으로 시찰하는 중요한 보안장비로써 이 자료를 공개할 경우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역의 노출 등 보안장비의 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되므로 수용자들의 악용의 우려가 있는 등 교정업무수행의 현저한 곤란이 예상됨은 물론 개인의 초상권 등의 침해를 우려할 수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문제수용자 수용실태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문제수용자의 인적사항 및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서면·면전진정 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교정위원 상담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수용자와 교정위원이 상담과정에서 여러 사항을 처우상 참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공무 수행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동태시찰 상황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보고내용과 관리, 계호를 위한 근무자의 결정의견 등 수용시설의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 교정기법, 수용자에 대한 통제, 수용동정 등 교정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이 광범위하게 초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장기수용자 상담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면담의 이유·상담과정 중 피면담자의 반응·상담태도·개인별 특이사항과 상담후의 조치·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면담내용의 유출에 따른 수용자의 불신을 유발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소신에 따른 판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독거수용자 시찰내용 및 보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는 수용기관이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여기에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및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성명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간병수용자의 건강 진단 검진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타 수용자 개인정보 및 진료과정을 관찰하여 병증을 유추하여 모방주장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정보는 수용관리상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적 동태사항 등 피관리자인 수용자의 행동 등에 대한 의견, 개별 처우관리사항, 행형기록 등 교정기관만이 알아야 할 의료행정 내부분서이므로 비공개함
교정기관	외부병원 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수용자의 관리, 계호방법, 교대 시간, 총기수량 및 수용자 동정 등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칭호번호, 성명, 질병명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V 주요 결정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본인에 대한 조사·징벌 의결기록 중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을 제외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과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와 교정사고 등 발생시 진술확보의 어려움 등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독거실 사용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등 교정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특별관리대상자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효율적인 수용관리 및 처우를 위한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내용과 타 수용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범죄경력조회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개인정보인 청구정보의 공개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교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구치소 수용중 본인의 신상, 행정에 대한 교위 이상의 개인면담 기록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개인면담 기록부는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가 아니며, 기관의 수용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면담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수용자 조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2004년 ○월 ○일 자살한 수용자 ○○○ 사건에 대한 기록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과 망자 및 유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수용자 ○○○ 등 3명의 ○○사건으로 처분된 내용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는 조사 관련 및 타 수용자의 성명, 진술, 의견, 판단 등 교정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개인의 명예나 인격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본부	이송관련 공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과 타수용자의 칭호번호,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탈주사고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 교정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행형성적 채점표 및 고지서	법 제9조 제1항 제4항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청원사항 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수용자 상담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상담자의 의견, 감독자의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상담내용 등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V 주요 결정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기획조정실	소년보호직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문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청구정보는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시험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기획조정실	○○지청 전기공사 내역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청구정보에는 공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입찰계약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입찰 등 계약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법무실	공증인 임명기준에 관한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청구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증인 임명과 관련한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감찰관실	감찰위원회 위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청구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감찰관실	출소자 귀가여비 지급액 지급 기준 및 현황에 대한 감사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청구정보는 감사·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의 집행, 교정 및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감찰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감찰관실	2005년도 감사실적 보고서와 그에 따른 징계 및 고발한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청구정보는 감사·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의 집행, 교정 및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감찰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감찰관실	최근 5년간 ○○구치소 의무과의 감시를 실시한 결과 및 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청구정보는 감사·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의 집행, 교정 및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감찰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법무실	법무부 변호사징계 위원회 처리 결과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청구정보에는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 및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구매물품 검수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청구정보에는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의약품 입찰내역서 (수용자 자비물품 공급 계약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청구정보는 계약체결 입찰계약서류로 제3자에게 공개된다면 계약당사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공개 입찰 등에 그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중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당해 계약 당사자인 납품업체도 위내용에 대해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개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구매 관련 입찰 계약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청구정보에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자 혹은 수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입찰계약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함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특정인의 출입국관련 사항 (타인의 출입국신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는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과장 봉급, 호봉 수당명세서 및 출근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V 주요 결정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의무과장이 수용자들에게 허가한 식품, 재활기구, 영양소 제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법 제19조, 제20조	의무과장이 허가한 식품, 재활기구, 영양소제제에 관한 일괄적인 목록은 비치해 두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병증에 상응한 품목을 허가하여 각 개인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목록을 일괄 공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진료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귀휴허가증 발행부 (귀휴심사부 귀휴자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귀휴허가자에 대한 성명, 칭호 번호 및 연락처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타인의 출소증명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출소 증명서는 본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계가족(증빙서류 첨부)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출소증명서는 개개인의 수형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특정약품을 복용하는 타수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복용하는 약품 등을 통해 개인의 질병을 유추할 수 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접견금지자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는 타 수용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출입국 관리기관	과거 초청자의 현재류지 주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는 비록 과거 초청자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출입국 관리기관	중국인 ○○○의 사진이 부착된 신상기록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는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치과진료업자 및 안경 맞춤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청구정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상기 결정사례는 일반적인 것들로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내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2 비(부분)공개 대상 내부규정

### 가. 부분공개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조항	비공개사유
1	보안과	수용기록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예규-882, '09.8.28.)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제73조 등 53개 조항(별지 1)	비공개 조항에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미결수용자, 수형자, 피보호감호자 등의 시설별 분류수용에 필요한 사항 및 수용 정원, 수용구분의 예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정보는 중요한 국가보안 목표시설인 교정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공안관련사범과 보안처분 관련자 등의 구분·수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수용자들이 수용구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예측하여 원하는 교정시설로의 이송을 위해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 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상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
2	보안과	수용관리 업무지침 (예규-886, '09.08.31.)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조 등 32개 조항 (별지 2)	비공개 조항에는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분류기준, 각종 처우시 근무자 근무방법, 폭행사건 대처방안, 화재·자살 등 교정 사고 발생시 근무자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효율적인 수용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3	보안과	계호업무 지침 (훈령-725, '09.08.31.)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조 등 101개 조항(별지 3)	비공개 조항에는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호방법, 수용자 도주시 대처요령 호송 및 출정시 무기 등의 휴대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공개시 수용자관리 및 질서 유지, 수용질서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고, 교정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 V 주요 결정 사례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조항	비공개사유
4	보안과	보안근무자 교대근무 운영지침 (예규-891, '09.08.31.)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조 내지 제7조, 제11조 내지 제14조, 제23조 내지 제25조	비공개 조항은 수용자의 계호 및 교정 시설 방호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의 근무체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사회일반(수용자 포함)에 공개할 경우 수용자 도주, 자살 등의 교정사고 방지업무 및 외부침입 방호업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5	분류 심사과	가석방 업무지침 (예규-878, '09.08.21.)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별표1	비공개 조항은 가석방 심사기준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가석방심사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교정업무 수행과 형의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6	분류심 사과	분류처우 업무지침 (예규-880, '09.08.24.)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별지 4)	비공개 조항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세부기준 및 기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수형자의 분류처우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집행을 침해하여 교정업무 수행과 형의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별지 1〉 수용기록업무 등에 관한 지침 비공개 조항

번호	비공개 조항	번호	비공개 조항
1	제73조	28	제106조
2	제77조	29	제107조
3	제81조	30	제108조
4	제82조	31	제109조
5	제83조	32	제110조
6	제84조	33	제111조
7	제85조	34	제112조
8	제86조	35	제113조
9	제87조	36	제114조
10	제88조	37	제115조
11	제89조	38	제116조
12	제90조	39	제117조
13	제91조	40	제118조
14	제92조	41	제119조
15	제93조	42	제120조
16	제94조	43	제121조
17	제95조	44	제122조
18	제96조	45	제123조
19	제97조	46	제124조
20	제98조	47	제125조
21	제99조	48	제126조
22	제100조	49	제127조
23	제101조	50	제128조
24	제102조	51	제129조
25	제103조	52	제130조
26	제104조	53	제131조
27	제105조	※ [별지 제13호]	

## 〈별지 2〉 수용관리 업무지침 비공개 조항

번호	비공개 조항	번호	비공개 조항
1	제6조	17	제35조
2	제10조	18	제153조
3	제11조	19	제154조
4	제13조	20	제155조
5	제15조	21	제156조
6	제16조	22	제157조
7	제20조	23	제158조
8	제21조	24	제159조
9	제22조	25	제160조
10	제28조	26	제161조
11	제29조	27	제162조
12	제30조	28	제163조
13	제31조	29	제164조
14	제32조	30	제165조
15	제33조	31	제178조
16	제34조	32	제179조

※ [별표 11]

〈별지 3〉 계호업무지침 비공개 조항

번호	비 공개 조 항	번호	비 공 개 조 항
1	제6조	31	제73조
2	제7조	32	제74조
3	제9조	33	제75조
4	제15조	34	제76조
5	제16조	35	제77조
6	제17조	36	제78조
7	제21조	37	제79조
8	제22조	38	제80조
9	제23조	39	제81조
10	제24조	40	제87조
11	제25조	41	제90조
12	제38조	42	제92조
13	제39조	43	제93조
14	제40조	44	제94조
15	제41조	45	제95조
16	제42조	46	제96조
17	제43조	47	제98조
18	제54조	48	제110조
19	제60조	49	제114조
20	제61조	50	제190조
21	제62조	51	제191조
22	제63조	52	제192조
23	제64조	53	제193조
24	제65조	54	제194조
25	제66조	55	제195조
26	제67조	56	제196조
27	제69조	57	제197조
28	제70조	58	제198조
29	제71조	59	제199조
30	제72조	60	제200조

# V 주요 결정 사례

번호	비 공개 조항	번호	비 공개 조항
61	제201조	82	제224조
62	제202조	83	제226조
63	제203조	84	제228조
64	제204조	85	제229조
65	제205조	86	제230조
66	제206조	87	제231조
67	제207조	88	제232조
68	제208조	89	제233조
69	제209조	90	제234조
70	제210조	91	제235조
71	제211조	92	제236조
72	제212조	93	제237조
73	제215조	94	제239조
74	제216조	95	제240조
75	제217조	96	제243조
76	제218조	97	제244조
77	제219조	98	제249조
78	제220조	99	제250조
79	제221조	100	제251조
80	제222조	101	제252조
81	제223조		

〈별지 4〉 분류처우 업무지침 비공개 조항

페이지	내용
15~16	라. 항목
17~20	(4) 예시 항목 6번 항목 가. ~ 바.
25	나. 항목
26~27	다. 항목
35	(3)의 예시, (4) 항목
36	10번 항목 가. ~ 나.
42~43	가, 항목
44~45	라. 항목
51	아. 항목
52~53	자. 항목
57~61	가. ~ 라. 항목
62	가. 항목
64~65	가, 항목
66~70	가. ~ 나. 항목
71~73	가. ~ 다. 항목, 가. ~ 다. 항목
76~77	라. ~ 마. 항목
78	나. 항목
79	다. 항목(예시)
80~81	라. 항목(예시)
82	〈예시〉 된 표 및 (가), (나) 항목
83~95	가. 항목
102~끝	제4장 ~ 제6장

## 나. 비공개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1	행정관리 담당관실	전시 법무부위임전결 규정 (훈령-703, '09.07.29.)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전시 법무부 제반 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II급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임
2	행정관리 담당관실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정보는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상황 평가 및 인사운영 기준 등에 관해 내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3	행정관리 담당관실	법무부 일반직 인사운영 기본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정보는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상황 평가 및 인사운영 기준 등에 관해 내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4	시설 담당관실	법무시설 기준 규칙 (훈령-665, '08.12.19.)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법무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교정 등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형의 집행, 교정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5	정보화 담당관실	법무부정보보안 기본지침 (훈령-686, '09.05.07.)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법무부 정보 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리 요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6	검찰과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훈령-340, '95.9.21.)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부부장검사 직위는 법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찰 내부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직으로서 그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조직업무에 지장 초래 우려
7	검찰과	전문부장검사의 인사와 직무에 관한 규정 (훈령-478, '03.4.1.)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전문부장검사 직위는 법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찰 내부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직으로서 그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조직업무에 지장 초래 우려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8	검찰과	검찰인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499, 04.5.19.)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검사인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검사인사 업무에 지장 초래 우려
9	검찰과	검사복무상황표 작성지침 (예규-763, '07.1.3.)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검사인사의 기초자료임과 동시에 검사평가의 근간을 이루는 인사평가 제도에 관한 내부지침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업무에 지장 초래 우려
10	검찰과	검사의 석순기준 (예규-772, '07.4.1.)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검사의 직급은 단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순 기준은 없으며, 인사관리 상 필요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외부로 공개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인사업무에 지장 초래 우려
11	보호 법제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2	보호 법제과	치료감호종료·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3	보호 법제과	가출소심사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4	보호 법제과	보호감호 집행면제 심사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5	보호 관찰과	가해제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처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범죄 예방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
16	보호 관찰과	가석방·가퇴원 심사신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17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필요 여부 등 심사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8	교정기획과	중요인사 구내순시 시 경호지침 (예규-876, '09.08.21.)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중요인사 구내순시시 경호요령 등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 중요인사의 신변 불안전 및 교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
19	사회복귀과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훈령-661, '08.12.18.)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비공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
20	보안과	국정원 조사대상자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예규-887, '08.08.31.)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로 구금된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호·호송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21	보안과	교정시설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지침 (예규-634, '02.06.05.)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이며 또한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위 비공개 정보는 교정시설의 보호구역,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구체적인 위치 설정 등의 정보가 있어 이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 교정시설의 경비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22	보안과	교정장비 관리지침 (예규-889, '09.08.31.)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정보는 교정시설 등에서 각종 교정사고 방지, 시설보호, 계호, 교정공무원 등의 직무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무기·보안장비 등 각종 장비와 그 부속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요령 및 관리기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무기, 탄약의 침탈 우려가 있는 등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23	출입국심사과	특정국가국민사증발급등에 관한업무처리지침 (훈령-277, '93.2.15.)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증발급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정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24	출입국심사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25	출입국심사과	출국금지·정지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6	출입국심사과	입국금지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7	출입국심사과	선박이용 중국인 복수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복수무사증 입국허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28	출입국심사과	관리대상자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공개할 경우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29	체류관리과	체류외국인 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관리기준,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30	체류관리과	사증발급인정서 취소 및 사증무효조치 요령 시달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기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V 주요 결정 사례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31	체류관리과	사증발급인정서 소요기간 설정 및 청구서류 간소화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32	체류관리과	자진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33	체류관리과	기업투자(D-8)자격자에 대한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상사주재(D-7)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용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34	체류관리과	외국인학교 교사 채용예정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허용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35	체류관리과	중국인의 단기체류사증 발급에 관한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증발급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정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36	체류관리과	사증발급인정서 업무처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증발급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정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37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증발급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정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38	체류관리과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유치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제도 개선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증발급 심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처리지침으로서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 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9	체류관리과	복수재입국 제한국가 재입국 허가개선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기존 비공개 지침인 '체류외국인관리지침'의 일부분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40	체류관리과	체류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관리지침,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41	체류관리과	영주자격 부여대상 및 체류관리업무처 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지침인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의 일부분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42	체류관리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지침인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의 일부분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43	체류관리과	무역경영 등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개선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지침인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의 일부분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44	체류관리과	외국인 전문인력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지침인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의 일부분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45	체류관리과	단순분야 취업 국내출생자녀 등 체류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지침인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의 일부분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46	체류관리과	근무처(연수업체) 무단 이탈자 처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지침인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의 일부분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47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체류허가 개선방안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지침인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의 일부분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V 주요 결정 사례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48	체류조사과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세부양정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의 세부양정기준 뿐만 아니라 출입국사범의 일반적 처리기준, 범칙금의 가감기준, 가중처벌 대상자, 양벌규정에 따른 불법고용주의 처벌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들이 범칙금 양정기준을 낮게 부과받기 위하여 법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 행위를 일삼아 자칫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49	체류조사과	출입국관리 정보활동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외국인 조사 업무수행 등 정보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써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50	체류조사과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지침 (훈령-705, '09.07.30.)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법무부 보안업무 내규 제20조 제4항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여 대외비로 분류한 외국인 조사 업무수행 등 정보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써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51	국적난민과	난민인정협의회 운영세칙 (훈령-647, '08.8.13.)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난민인정 관련 업무는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소속기관, 직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52	사회통합과	이민자 기본소양 평가관리규정 (예규-856, '09.06.03.)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 규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각종 시험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평가항목, 출제방법, 평가 및 채점기준 등 시험 전반에 대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 내부업무 표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시험과 관련된 민간업체 등의 유사 문제 개발 또는 문제집 등 상업행위에 노출될 수 있고, 각종 평가 부정행위를 사전 모의할 수 있는 등 관련 시험 업무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53	정보팀	법무부 소관 국가정보 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훈령-716, '09.08.26.)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규제자 기록관리 등 국가정보관리의 보안성 유지가 필요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54	감찰 담당관실	감찰 전산망 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55	감찰 담당관실	사정자료 관리 및 처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56	운영 지원과	국내외 공무 출장에 따른 비밀 보안관리지침 (훈령-261, '91.12.30.)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7	출입국 관리기관	대테러 상황반 및 정첩보 접수, 처리체계 수립 시행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58	출입국 관리기관	대테러상황반 운영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V 주요 결정 사례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59	출입국관리기관	테러경보 발령 및 대응 세부시행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0	출입국관리기관	2006년도 대테러활동 세부시행 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2	출입국관리기관	비상 CD 긴급 배포 체계 수립 시행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열려 있는 **窓**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 참 고 자 료

## 1. 법무부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

## 2.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0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 3. 수수료 산정 기준표

## 4. 각종 정보공개 관련서식



열려 있는 **窓**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 1 법무부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

## ■ 기획조정실

(지역번호 : 02)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li> <li>○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li> <li>○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li> <li>○ 보도자료 작성 및 보도내용의 확인</li> <li>○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li> </ul>	2110 - 3009
비상계획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 정부비상훈련</li> <li>○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li> <li>○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li> </ul>	2110 - 3086
기획재정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li> <li>○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li> <li>○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503 - 7026 ~ 7
행정관리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li> <li>○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li> <li>○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li> <li>○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사무</li> </ul>	2110 - 3052, 3105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p>행정관리 담당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li> <li>○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집행</li> <li>○ 행정관리조사</li> <li>○ 보고심사 및 관리</li> <li>○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li> <li>○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li> <li>○ 성과관리시스템 운영</li> <li>○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총괄</li> <li>○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총괄</li> <li>○ 정보사업 심사·분석</li> <li>○ 정책품질관리 총괄</li> <li>○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li> <li>○ 행정통계의 작성·분석</li> <li>○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li> <li>○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li> <li>○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li> <li>○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li> <li>○ 민원서 접수·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li> <li>○ 갈등관리 업무</li> <li>○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등</li> </ul>	<p>2110 - 3052, 3105</p>
<p>법질서 담당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 업무</li> <li>○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li> <li>○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조정</li> </ul>	<p>2110 - 3052, 3105</p>
<p>시설담당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li> <li>○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li> <li>○ 법무시설공사 시공계획의 수립·시행</li> <li>○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li> <li>○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li> <li>○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2110 - 3112</p>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p>정보화 담당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행정 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li> <li>○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업무의 지원·조정 및 감독</li> <li>○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li> <li>○부내 정보화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li> <li>○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li> <li>○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화자원(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의 수급·관리</li> <li>○전자문서의 유통 및 정보자료의 구축·보호</li> <li>○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의 운용·관리</li> <li>○정보화 관련 교육 및 그 밖의 전산 관련 일반행정</li> </ul>	<p>2110 - 3146~7</p>

■ 법 무 실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법무심의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 법령 안의 기초 및 심사</li> <li>○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 배상관계법령의 해석</li> <li>○ 법무부 관련 법령의 해석</li> <li>○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li> <li>○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li> <li>○ 민사관계법령의 연구</li> <li>○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li> <li>○ 도서관리</li> </ul>	2110-3164 ~ 5
법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li> <li>○ 공증인·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li> <li>○ 법무연수원의 감독</li> <li>○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li> <li>○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li> <li>○ 공익법무관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li> <li>○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li> <li>○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2110-3178 ~ 9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국제법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관계 법률자문</li> <li>○ 조약등 국제협약의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li> <li>○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에 관한 사항</li> <li>○ 법무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li> <li>○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에 관한 국제회의의 참가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li> <li>○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법무에 관한 국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li> <li>○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2110 - 3661~2
국가송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li> <li>○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li> <li>○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li> <li>○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감독</li> <li>○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li> <li>○ 본부배상심의회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지휘·감독</li> <li>○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지휘·감독</li> <li>○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li> <li>○ 헌법재판의 수행</li> <li>○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li> <li>○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li> <li>○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li> <li>○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li> </ul>	2110 - 3202~3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통일법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li> <li>○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li> <li>○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li> <li>○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li> <li>○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li> <li>○북한의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 평가</li> <li>○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li> <li>○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2110 - 3223~4
상사법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사 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li> <li>○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li> <li>○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li> <li>○상사 관계법령의 해석</li> <li>○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자료·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li> <li>○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li> <li>○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li> </ul>	2110 - 3167~8
법조인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조인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li> <li>○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li> <li>○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li> <li>○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li> <li>○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li> <li>○시험문제의 편집·관리</li> <li>○시험문제은행의 관리</li> <li>○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유지</li> <li>○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서무</li> </ul>	2110 - 3234~5

■ 검찰국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검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검찰행정(인사·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li> <li>○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li> <li>○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li> <li>○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li> <li>○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li> <li>○검찰운영의 개선</li> <li>○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503 - 7047~8
형사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li> <li>○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li> <li>○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li> <li>○형사사건의 수사지휘</li> <li>○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감독</li> <li>○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감독</li> <li>○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li> <li>○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li> <li>○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li> <li>○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li> <li>○범죄없는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269~70
공안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li> <li>○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공안관계법령의 입안</li> <li>○검찰정보에 관한 사항</li> <li>○공안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280~1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공안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안사건의 수사지휘</li> <li>○공안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li> <li>○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li> <li>○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li> <li>○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li> <li>○「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li> <li>○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li> <li>○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li> </ul>	2110 - 3280~1
국제형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li> <li>○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li> <li>○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li> <li>○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li> <li>○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li> <li>○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li> <li>○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li> <li>○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li> <li>○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293~4
형사법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관계 법령의 입안</li> <li>○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li> </ul>	2110 - 3307~8

■ 감찰관실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감찰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정업무</li> <li>○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li> <li>○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li> <li>○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li> <li>○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li> <li>○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li> <li>○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li> <li>○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li> <li>○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li> <li>○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li> </ul>	2110 - 3014~5
감사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산하단체에 대한 감사</li> <li>○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li> <li>○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li> <li>○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li> <li>○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li> </ul>	503 - 7014

■ 범죄예방정책국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범죄예방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보호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li> <li>○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li> <li>○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li> <li>○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li> <li>○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2110 - 3311~2
보호법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보호관찰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li> <li>○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감독</li> <li>○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li> <li>○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치료감호청구사건에서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li> <li>○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li> <li>○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li> </ul>	2110 - 3326, 3329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보호법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li> <li>○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li> <li>○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li> <li>○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li> <li>○ 범죄예방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li> <li>○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관련 청소년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li> <li>○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326, 3329
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li> <li>○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 감독</li> <li>○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li> <li>○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 등”이라 함)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옷·급식에 관한 사항</li> <li>○ 보호소년 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li> <li>○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 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li> <li>○ 보호소년 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342~3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소년 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li> <li>○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li> <li>○보호소년 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취업알선·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li> <li>○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li> <li>○보호소년 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342~3
보호관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관찰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li> <li>○보호관찰실시에 관한 사항</li> <li>○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li> <li>○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청구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li> <li>○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보호관찰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li> <li>○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휘·감독</li> <li>○「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li> <li>○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309~10
법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법 교육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li> <li>○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li> <li>○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li> <li>○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314~5

■ 인 권 국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인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li> <li>○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li> <li>○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li> <li>○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li> <li>○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작성</li> <li>○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li> <li>○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li> <li>○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준법정신의 계도</li> <li>○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li> <li>○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 개선</li> <li>○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업무 지도·감독</li> <li>○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li> <li>○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2110 - 3213~4
인권구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li> <li>○ 범죄피해구조심의회회의 지휘·감독</li> <li>○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li> <li>○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li> <li>○ 법률구조법인의 지도·감독</li> </ul>	2110 - 3263
인권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261

■ 교정본부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교정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li> <li>○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li> <li>○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li> <li>○ 지방교정청등에 대한 지도·감독</li> <li>○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li> <li>○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li> <li>○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li> <li>○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2110 - 3364~5
직업훈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li> <li>○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li> <li>○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li> <li>○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의 작업상여금·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li> <li>○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li> <li>○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li> <li>○ 국가기능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감독</li> <li>○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 알선·지원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401~2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사회복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li> <li>○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li> <li>○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li> <li>○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li> <li>○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li> <li>○교정위원의 위촉·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li> <li>○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제도 연구</li> <li>○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li> <li>○수형자의 귀휴·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li> <li>○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계획수립 및 시행</li> <li>○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li> </ul>	2110 - 3441~2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li> <li>○교정시설의 신축·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시행</li> <li>○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li> <li>○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li> <li>○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li> <li>○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li> <li>○수용자 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428, 3431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보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자의 수용·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수용자의 이송</li> <li>○수용자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공안사범의 수용·처우·이송 및 석방</li> <li>○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li> <li>○공안사범의 청원</li> <li>○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li> <li>○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li> <li>○교정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출정(出廷)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접견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교정시설의 경비 및 비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li> <li>○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li> <li>○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li> <li>○경비교도의 임용 및 배치</li> <li>○경비교도의 복무·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ul>	2110 - 3379, 3383
분류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li> <li>○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li> <li>○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li> <li>○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교정행정 관계법령의 입안</li> <li>○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li> <li>○교정행정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608~9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의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li> <li>○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li> <li>○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li> <li>○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li> <li>○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li> <li>○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li> </ul>	2110 - 3611~2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출입국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li> <li>○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li> <li>○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li> <li>○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li> <li>○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li> <li>○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li> <li>○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li> <li>○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li> <li>○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li> <li>○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500 - 9031~2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출입국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li> <li>○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li> <li>○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li> <li>○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li> <li>○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li> <li>○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li> <li>○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li> <li>○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li> <li>○「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li> <li>○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li> <li>○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li> </ul>	500 - 9123
체류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li> <li>○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li> <li>○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li> <li>○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li> <li>○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li> <li>○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li> <li>○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li> <li>○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li> <li>○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li> <li>○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li> <li>○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li> </ul>	500 - 9064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체류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li> <li>○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li> <li>○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li> <li>○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li> <li>○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li> </ul>	500 - 9081~2
외국인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li> <li>○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li> <li>○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li> <li>○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li> <li>○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li> <li>○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li> <li>○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li> <li>○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li> </ul>	500 - 9013~4
국적난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li> <li>○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li> <li>○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li> <li>○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li> <li>○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li> <li>○ 난민지원센터 운영 및 난민사회정착 지원</li> <li>○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국적·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li> </ul>	500 - 9227, 9229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사회통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li> <li>○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적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li> <li>○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li> <li>○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li> <li>○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li> <li>○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li> <li>○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li> <li>○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li> </ul>	500 - 9151~2
정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li> <li>○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li> <li>○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 심사제도의 연구·개선</li> <li>○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li> <li>○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li> <li>○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ul>	500 - 9131~2

■ 운영지원과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li> <li>○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li> <li>○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li> <li>○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활용 및 자료관의 운영·관리</li> <li>○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li> <li>○물품의 구매 및 조달</li> <li>○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li> <li>○일반회계예산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집행</li> <li>○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2110 - 3061, 3063

## 2 정보공개 관련 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71호]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 3 장 정보공개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 (정보공개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4 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별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에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7127호,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 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68> 생략

### 부 칙 <제8026호, 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 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 칙 〈제8854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행정심판법) 〈제8871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07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정보공개절차

**제6조 (정보공개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 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

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 4 장 이의신청

**제18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 (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안전부 혁신정책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실태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에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에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에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8493호, 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입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85호, 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생략

## 부 칙 〈제20707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4. 7. 29. 행정안전부령 제2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수수료 정산 기준표 (제7조관련)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매 기준)1회 : 200원</li> <li>-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li>- B4이하 25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li> <li>-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li>- B4이하 25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매 기준)1회 : 200원</li> <li>-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도면·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매 : 2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1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매 : 2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li>- B4이하 25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매기준)1회 : 200원</li> <li>-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개마다 5,000원</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롤마다 5,000원</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 1,500원</li> <li>-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영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li> <li>- 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li> <li>-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출력물 : 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200원</li> <li>- B4이하 250원</li> <li>- 1매초과마다 150원</li> </ul> </li> <li>복제 - 1롤마다 1,000원</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	-
사진·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매 : 20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li> <li>- 1매 초과마다 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li>복제(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매 : 20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 250원</li> <li>- 1매 초과마다 3"×5" 50원</li> <li>5"×7" 100원</li> <li>8"×10" 150원</li> </ul> </li>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MB 기준)1회 : 200원</li> <li>-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li> </ul> </li> </ul> <p>※ 매체비용은 별도</p>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2호서식]

##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법인명등 및대표자)			주 민 등 록 ( 여 권 · 외 국 인 등 록 ) 번 호			
				사 업 자 ( 법 인 · 단 체 ) 등 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령 방 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 술 청 취 자 (담당 공무원 등)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구 술 자 인 (청 구 인)	기관인 경우	기관명			직 급	서명 또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명 또는 인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p>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접 수 기 관)</p> <p>※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정보공개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mm × 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건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허용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건 청 취 자 (담당공무원등)	직 급				이름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연락처				이름		
	일반인인 경 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 (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청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 지 서 수 령 유 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 의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정보공개 운영실태

###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법제9조 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 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관 결 결 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 행정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초판 발행일** : 2007년 12월

**1차 개정판** : 2009년 12월

**발행처** :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209호

전화 / 02-2110-3484

팩스 / 02-2110-3079

**집필 및 편집** :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이은식

담당사무관 김경수

담당 이경남

담당 이우람

**인쇄처** : 동광문화사

전화 / 02-503-5165

leelee1974@hanmail.net

# 행정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